

I

미 국

[애완동물]	3
[관상조류]	45
[관상어]	66
[곤충류]	93

[애완동물]

1_ 시장 규모 및 산업동향

가. 시장규모

■ 최근 3개년 시장규모

- 미국 애완동물 시장은 점점 증가하여 2007년에는 412억 달러, 2008년에는 432억 달러, 2009년에는 455억 달러가 소비되었고 2010년에는 전년 대비 4.61% 증가한 약 477억 달러로 예상됨
- 2009년 미국 소비자들은 애완동물 관리·양육을 위해 지출한 455억 달러 중 7.5%인 34억 달러를 애완동물 서비스로 지출했음
- 2010년 현재 미 전국의 애완동물 서비스 업체는 4만 7,277개로 총 매출액은 27억 2,400만 달러로 예상됨
→ 2002년 애완동물 서비스 시장은 6,4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09/10년에는 7,140만 달러로 성장

■ 시장구성, 시장성장율 및 성장요인

- 미국의 애완동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최근 APPA에서 실시한 2만여명의 애완동물 소유자 설문 조사 결과, 경기 침체에도 애완동물에 대한 지출액은 별 차이가 없으며 추후 소비감소 계획도 없을 것이라 밝혀 미국인들이 애완동물을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남
- 애완동물 중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소유한 소비자들이 애완동물 용품과 서비스 구매에 가장 적극적임.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주로 근거리에 있는 업체를 애용하지만 원거리에 있더라도 지인들이 추천하거나 좋은 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전망

-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애완동물 관리와 서비스 산업이 발달했으며 불경기 여파로 침체된 시장 가운데서도 소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최근 꾸준한 성장을 함. 경기회복과 더불어 애완동물 시장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
- 애완동물 그루밍과 보육 서비스의 꾸준한 성장 예상(아래 표 참조)
 - 2010년 총 매출은 작년보다 1.2% 상승한 27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략 5만 448개의 매장이 개점되고 77만여 명이 채용될 전망

<2011~2016년 예상 총 매출 및 성장률>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총매출	성장률
2011	2,825	3.7
2012	2,906	2.9
2013	2,991	2.9
2014	3,080	3.0
2015	3,182	3.3
2016	3,290	3.4

자료원: IBIS World

- 애완동물 그루밍(grooming), 호텔 및 데이케어 서비스 이외에도 새롭고 다양한 애완동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애완동물 관리 기구나 호텔, 데이케어 관련용품과 기술 인력의 수요 증가 예상
- 그루밍과 호텔, 데이케어 서비스에 사용되는 장비나 용품들에 새로운 기술력을 더해 미국 시장에 수출을 꾀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동물병원에서 보육과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
 - 기존에는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주로 호텔, 데이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요즘에는 동물병원에서 의료, 그루밍, 호텔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 도모

- 애완동물 사진관 등 다양하고 새로운 애완동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 만한 서비스를 개발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음

나. 산업 특성 및 동향

■ 산업특징 및 최근 트렌드

- 2009년 후반기를 시작으로 서서히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면서 애완동물 시장도 점차 되살아나기 시작
 - 최근 몇 년 사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애완동물 미용 관리와 그루밍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 하지만 경기 침체로 가계 수입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애완동물 서비스 시장 역시 침체였음
 - 하지만, 2009년 4분기에 미 애완동물 서비스 시장 주도업체인 PetsMart와 PETCO 모두 매출 성장을 보이며 시장 회복세
- 주요 인기 서비스는 호텔, 그루밍, 데이케어

1) 호텔 서비스

- 미 애완동물 호텔협회가 2010년 초에 조사한 결과 매년 3000만 고객이 9,000여개의 애완동물 호텔을 이용
- 호텔 서비스 이외에도 그루밍, 트레이닝, 애완동물 용품 판매를 겸하고 있으며 동물병원과 연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대부분의 고객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소비자들이지만 조류, 말, 파충류, 어류 등 특별한 애완동물을 위한 서비스도 늘어가는 추세

2) 그루밍 서비스

- 털손질, 목욕, 스타일링, 귀 청결관리, 발톱관리, 미용 등의 서비스

-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주 고객은 개를 키우는 소비자
- 모빌 그루밍 인기: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루밍을 하는 맞춤형 서비스
- Dog Show 관련 소비자들을 겨냥한 소수의 셀프서비스 그루밍 샵도 있음

3) 데이케어 서비스

- 주인의 부재시 애완동물이 혼자 있지 않도록 돌봐주는 보육 서비스
- 호텔과 데이케어를 함께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며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고객들이 주로 애용

〈미 애완동물 서비스 분류〉



자료원 : IBIS World

- 미 애완동물 서비스 시장의 대표적인 업체는 PetsMart Inc. 와 PETCO Animal Supplies, Inc.로 미 애완동물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시장의 11%를 차지함.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 업체들로 이들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2009/2010 산업 경향
 - 1) 타 산업의 경향과 같이 애완동물 시장에서도 최근 유행은 친환경 제품이라 할 수 있음. 유기농 사료 외에 장난감, 액세서리, 냄새 제거제까지 그 범위가 점점

-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친환경 전문 펫샵이나 온라인 웹사이트도 증가하고 있음. PetsMart, PETCO 등 대형 소매업체들도 고양이, 개의 유기농 사료에 국한되던 친환경 제품이 침대, 목줄, 옷, 샴푸 등 관련 제품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임
- 2) 대형 브랜드 업체들이 애완동물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추세. 헤어 케어 브랜드인 Paul Mitchell, 90년 전통의 스테이크 업체인 Omaha Steaks, 오토바이 브랜드인 Harley Davidson, 의류업체 Old Navy 등이 샴푸, 의류, 간식 등의 판매에 나섬
- 3) 기존의 제품에서 아이디어를 가미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기존의 손톱깎이 형식의 제품에서 벗어나 자르지 않고 갈아서 아픔 없이 손질할 수 있는 Pedi Paw, 높이별로 조절 가능한 먹이 그릇 시스템인 POPWARE가 있음



자료원 : As Seen on TV, Pet Business

■ 산업 강약점 및 기회/위협요인

- 미국의 애완동물 산업은 성장 추세이나 한국에서 애완동물을 수입하기에는 제약이 많고 규정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어려운 현황
- 동물관리국(Animal Control Department)에서도 근무하면서 Sam's Kennel 을 운영하는 농장 주인에 의하면 한국의 애완동물 수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음
 - 운송비, 건강진단서 등을 고려하면 애완동물 단가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미국 애완동물 시장내 경쟁력이 떨어짐
 - 가격을 맞추려면 애완동물의 품질이 떨어짐

- 강아지의 경우 4개월 미만은 수입 불가임. 미국에는 법적으로 8주 미만된 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가격을 맞추려고 나이를 속이고 어린 강아지들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에 있는 애완동물의 품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선정해야 하나 이윤을 따지다 보면 어려운 현황임
- 어린 강아지들은 운송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 도착 후에 병들어 일찍 죽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함. 이로 인해 판매 전이나 판매 후에 피해 보상이나 환불 등에 문제가 생김. 방문했던 한미애견 또한 한국과 거래한 경험이 있었으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한국과는 거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 미국내 수출입 규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임
- 미국은 애완동물 구입 후 2주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국의 진돗개 같은 경우 야생성과 충성심 때문에 버림받은 경우 동물보호소에서 사람들이 제일 데려가기 꺼려하는 애완동물로 알려져 있음

■ 시사점 등

- 미국은 지난 3년동안 애완동물 시장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상승세가 예상되고 특히 사료, 간식, 각종 애완동물 용품들의 판매 강세가 예상됨
- 온라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했던 PediPaw의 성공으로 보아 아이디어, 품질, 기술력만 갖추어져 있다면 외국업체로서의 애완동물 용품 시장 개척도 충분한 가능성 있음
- 한국에서 애완동물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현재 시스템은 효율적이지 않은 관계로 미국 내 전문 브리더를 양성해 한국에서의 일괄 구매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대부분의 브리더는 판매 및 유통에 드는 가격이 맞지 않아 애완동물 수입을 꺼리는 추세. 애완동물 수출 증진을 위한 가격 조정 및 지원이 필요함
- 한국에 있는 애완동물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리거나 건강하지 않은

강아지를 보내는 등 불법적인 수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법적인 정책 및 검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직접적인 애완동물 수출보다는 획기적인 애완동물 용품 개발 및 포장에 신경 써서 수출을 하는 편이 더 승산이 있음
- 방문했던 ‘한미 애견’에 의하면 미국의 애완동물 소비자가 애용하고 있는 애완동물 용품들이 있으며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 애완동물 용품은 좀처럼 바꾸지 않는 편이라고 함. 새로운 포장방법을 시도하기 보다는 미국 소비자에 눈에 익숙한 포장법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좋음

2_ 생산동향

가. 생산 현황

■ 생산 규모

- 미국에는 약 4,000개 정도의 정부 인증을 받은 애완동물 생산농장(breeding kennel)이 있으며 대부분은 약 100마리 내외의 애완동물을 보유하고 있음
- 이 농장들은 1년에 50만 마리 이상의 강아지들을 약 3,500개의 애완동물 가게로 공급하고 있음
-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동물 보호단체에서 상업적인 애완동물 생산 농장에서 동물 보호를 위해 50마리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시에 올라갔으나 거부된 사례가 있음. 계속되는 동물 애호가들의 동물 보호 운동으로 생산농가에서의 검열이 강화되고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다

■ 사육시설 종류, 크기 등

- 사육시설을 지을 때 Kennel Building permit, fire department permit, electric permit, septic tank permit, plumbing permit 등 필요한 허가증들을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함
- 사육 시설은 보유하고 있는 애완동물의 크기와 각 지역 법에 따라 애완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깨끗하고 튼튼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방문했던 Sam's Kennel의 경우 충분한 환기 시설과 온도 조절 시설, 햇빛과 날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리개, 동물 부상 방지 시설, 충분한 물과 사료 공급, 필요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동물관리국 (Animal Control Department)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확보한 상태임
- 정기적으로 동물관리국에서 검열을 나와 위에 언급한 허가증들을 다 확인하고 애완동물의 건강상태와 청결상태 및 사육시설의 바뀐 점 등을 검사함



사진: Sam's Kennel 사육시설 전경

■ 품종 육성 및 관리

- 개의 종류는 약 5,000 종이 있으나 그 중 150종 정도만이 미국의 애완견 등록 협회인 AKC(American Kennel Club)에 인정을 받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임

		
리트리어 (Landor Retriever)	요크셔테리어 (Yorkshire Terrier)	말티즈 (Maltese)
		
푸들 (Poodle)	시츄(ShiTzu)	포메라니안 (Pomeranian)

- 그중 가장 보편적인 개 품종은 리트리버, 요크셔테리어,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시츄 등이 있음
- 고양이의 경우 개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애완동물이며 미국 내 약 100종이 있으나 그중 41종만이 미국의 고양이 애호인 협회인 CFA(Cat Fancier's Association)에 인정을 받은 상태임
- 그중 보편적인 고양이 종류는 페르시안, 메인 쿤, 엑소틱, 샴, 아비시니안, 래그돌 등이 있음

		
페르시안(Persian)	메인 쿤(Maine Coon)	엑소틱 (Exotic)
		
삼(Siamese)	아비니시안 (Abyssinian)	래그돌(Ragdoll)

■ 생산농가/업체 현황

- 대부분의 주요 대량 애완동물 생산 농장은 미저리, 네브라스카, 캔자스, 아이오와, 알칸사스, 오클라호마와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해 있음
- 캘리포니아의 경우 랭케스터(Lancaster)와 팜데일(Palmdale)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브리더들이 몰려있으며 대부분의 애완동물 생산농가는 전문성을 위해 한 가지의 애완동물 종류만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추세임

■ 관련 단체 등

● 개 협회

American Kennel Club (AKC)
 American Dog Breeders Association (ADBA)
 American Dog Owners Association (ADOA)
 United States Dog Agility Association (USDAA)
 American Canine Association (ACA)
 American Rescue Dog Association (ARDA)

● 고양이 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Cat Enthusiasts (AACE)
 American Cat Association (ACA)
 American Cat Fancier's Association (ACFA)
 Canadian Cat Association (CCA)
 Cat Fanciers' Association (CFA)
 Cat Fanciers' Federation (CFF)
 The International Cat Association (TICA)
 United Feline Organization (UFO)

● 애완동물 관련 협회

Pet Care Services Association (American Boarding Kennel Association)
 Humane Society of America
 ASPCA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나. 생산 관련 R&D 현황

■ 연구현황 및 연구소 운영 여부

- Lifestyle Pets 회사는 UCLA와 함께 연구하여 2006년부터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고양이 및 강아지를 연구, 생산중임
- 이외에도 다른 종류끼리의 교배를 통한 새로운 종류의 연구·생산이 여러 브리더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진행중임

■ 민간주도 또는 정부지원 여부 등

- 대부분의 애완동물 산업은 민간주도이나 정부에서 수출입에 관련된 검역 및 판매와 유통 등 애완동물 산업에 관련된 법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추세임

3_ 유통실태

가. 유통현황

■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 농장에서 생산되는 애완동물은 크게 세 가지의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 1) 생산자 → 소비자
 - 2) 생산자 → 소매상 → 소비자
 - 3) 생산자 → 브로커/로컬 바이어 → 소매상 → 소비자
- 미국 사회에서는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동물 보호소(Animal Shelter)를 통해 많은 수의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추세

- 애완동물 학대를 예방하는 협회인 ASPCA(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5,000개의 동물 보호소가 있으며 애완동물을 입양할 때 일반적으로 \$10-\$15를 내며 그 후 등록비 등은 입양자 부담임
- 또한 애완동물 서비스 시장의 대표적인 업체인 PetsMart Inc.와 PETCO Animal Supplies, Inc.에서는 Puppy Mill 같은 애완동물 대량 생산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고 윤리적으로 어긋난다고 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직접 판매하지 않으며 이 업체들을 통한 입양만 가능함

■ 판매방법

- 1) 생산농가(Breeder)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광고를 통해 연락해 온 소비자가 직접 방문 후 판매
 - 주로 생산농가의 개인 웹사이트에 광고
 - 현재 있는 애완동물과 앞으로 있게 될 애완동물 정보
 - 애완동물의 부모와 애완동물의 사진
 - 애완동물 족보 제공
 - Pennysaver 같은 지역 신문에 광고
 - LA Times 같은 주류 지역 신문에 광고
- 2) 생산 농가에서 소매업체로 직접 공급 후 소매업체에서 판매
 - 소매업체는 지역마다 유통마진이 틀림
 - 방문했던 한미애견의 경우, 가격과 품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특정 생산농가 한 곳에서만 애완견을 공급받고 있었음
- 3) 생산 농가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소매업체로 공급 후 판매
 - 미저리 주에 위치한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Hunte, Trash 등에서 각 생산 농가에서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을 구입 후 대량으로 소매업체에 판매

- 일반적으로 Puppy Mill로 알려져 있으며, 보관 및 유통 과정이 애완동물이 학대당하는 환경이라 미국 사회에서 유통업체를 통한 대량 판매에 대해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추세임

■ 전문점/인터넷 동향

- 애완동물 서비스 시장의 대표적인 업체는 PetsMart Inc.와 PETCO Animal Supplies, Inc.로 미 애완동물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시장의 11%를 차지함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업체들로 이들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PetsMart, Inc. (www.petsmart.com)
 - 시장점유율 : 7.0%
 - 현재 미국 내 최대의 애완동물 제품 및 서비스 업체로 1987년에 설립. 미국과 캐나다에 1,149개의 매장을 운영중이고, 그 중 161개에서 애완동물 호텔과 데이케어 서비스 가능
 - 애완동물 호텔, 데이케어, 그루밍, 트레이닝, 분양, Banfield 동물병원 서비스
 - 미 전체의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2009년에는 전년대비 총 판매액이 5.4% 증가했으며 2009년 4분기에만 1.5% 매출 증가를 보이며 총 수입액은 3.4% 상승함
 - 아래의 연차 보고서를 보면 2006년에서 2008년의 서비스 판매액이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음

<2006~2008 PetsMart Inc. 연차보고서>

(단위 : US\$천)

	2006	2007	2008
총매출	4,266,857	4,672,656	5,065,293
서비스매출	373,681	454,940	526,730
매출 총이익	30.9%	30.7%	29.5%
순이익	185,069	258,684	192,670
현금흐름	289,291	332,716	420,700

자료원 : PetsMart.com

- PETCO Animal Supplies, Inc. (www.petco.com)
 - 시장 점유율 : 3.2%
 - 그루밍, 트레이닝, 예방접종, 전문 사진관, 동물 보험, 모빌 그루밍, 온라인 응급처치, DNA 테스트 서비스 제공
 - 2008년에 8,300만 달러, 2009년에는 8,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예상
 - 1965년에 설립돼 2010년 현재 미 전국에 800개의 매장이 운영
 - 환경 친화적인 무공해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
- 대부분의 애완동물은 인터넷보다는 매장에서 직접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소규모의 브리더들을 판매 혹은 입양을 위해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웹사이트들이 있음

■ 연간 매출규모

- 2010년 미국 애완동물 시장 규모는 총 477억 달러로 추산되며 애완동물 용품 판매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2007-2010 미국 애완동물 시장 규모>

연도	2007	2008	2009	2010 예상비용
시장 규모 (US\$)	412억	432억	455억	477억

자료원 : APPA

나. 구매 및 소비특성

■ 주 소비자

- 개, 고양이를 기르는 소비자들이 미국 애완동물 서비스 시장의 주 고객이며 가계수입과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는 정비례함
 - 가계 연수입 5만 5,000달러 이상의 가구 중 40%는 개를 키우고 약 34%는 고양이를 키움

- 가계 연수입 2만 달러 미만의 가구에서 가장 적은 수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도 29.7%는 개를, 28.1%는 고양이를 키움

■ 구매방법

-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와 거래하는 경우
 - 생산자의 광고를 보고 직접 농장으로 찾아가서 애완동물을 본 후에 직거래
- 소비자가 소매업체에 가서 구매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농장이 도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소매업체에 판매 후 소비자가 소매업체에서 구매
- 동물 보호소에서 소액의 금액을 지불 후 중성화 된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 미국 사회에서는 애완동물이 비싸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기보다는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경우가 많음
 - 애완동물을 동물 보호소에서 맡게 되면 카운티 수의사가 와서 필요한 치료와 예방접종을 함
 - 일반적으로 현재는 1주일 기준으로 동물 보호소로 들어오는 애완동물의 80%가 (약 10-15마리) 입양이 되고 20%는 안락사 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백인 노인 같은 경우 장애가 있는 애완동물을 입양해서 돌보면서 키우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 의식 및 소유동향

- 미국 사회는 독신자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기르는 풍조가 널리 퍼지면서 애완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와 더불어 애완동물 시장도 성장 추세임
-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에 의하면 2007년 기준(최신 통계) 전체 가정의 37.2%가 개를, 32.4%가 고양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2007년 미국 애완동물 보유 현황〉

	개	고양이
애완동물 보유율	37.2%	32.4%
애완동물 보유가구	43,021,000	37,460,000
가구당 평균 보유수(마리)	1.7	2.2
미국 내 총 마릿수	72,114,000	81,721,000
가구당 연간 동물병원 방문 횟수	2.6	1.7
가구당 연간 동물병원 지출	\$356	\$190
마리당 동물병원 지출	\$200	\$81

자료원: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 연간 지출규모

- 2009/2010 APPA 전국 애완동물 소유자 조사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소유자들이 일반적으로 매년 애완동물에 소비하는 기본 비용은 한 마리당 개는 \$1,490, 고양이는 \$1,045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간 애완동물에 소비되는 기본 비용〉

분류	개	고양이
수술을 위한 수의사 방문	\$532	\$278
사료	\$229	\$203
애완동물 보육 서비스	\$273	\$255
정기검진	\$225	\$203
그루밍 서비스	\$66	\$22
비타민	\$61	\$28
간식	\$64	\$37
장난감	\$40	\$19
총 합계	\$1,490	\$1,045

자료원: APPA

다. 가격동향

■ 품종, 원산지별 수입가격, 도소매가격, 유통마진, 소비자가격 등

- 판매 가격은 공산품처럼 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며, 생후 개월 수와 개의 외모 등 애완동물의 품질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임. 도매가격은 일반적으로 품질에 따라 한 마리 당 대략 \$1,200-2,000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음
- 유통마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시골 지역은 가격이 낮은 반면 Malibu, Beverly Hills 같은 부촌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게의 렌트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소비자가격이 높은 편임

라. 기타 특이사항

- 미국 애완동물 용품 판매가 전체 애완동물 시장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획기적인 상품들이 시장에 선 보이고 있는 추세임
 - 애견용 간식으로 숫자를 만든 크리스마스 달력, 유태교 율법에 따라 만든 애완견용 하누카 간식 등 특별한 날을 애완동물과 함께 축하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반영한 상품
 - 명품 브랜드의 애완동물 시장 진출: 루이뷔통에서는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애견 운반 가방을, 버버리에서는 고유 문양을 새겨 넣은 강아지 옷을 내놓고 명품 강아지 족을 만들어 내고 있음

4_ 수출입동향

● HS코드 및 관세율

Code	품명	내역	관세율
0106199020	기타 산 동물 (Other live Animals)	개(Dogs)	Free
0106199095	기타 산 동물 (Other live Animals)	기타(Other)	Free

출처 : 미국 관세청

■ 수출입동향

● 개 수입동향

(단위 : 천US\$)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독일	1,223	3,929	4,872	4,439	4,520
네덜란드	1,478	3,592	4,185	4,765	4,169
콜롬비아	416	983	1,649	1,286	1,275
슬로바키아	332	593	861	938	637
호주	374	727	866	792	556
한국	96	248	738	595	309
기타	2,030	5,505	6,235	4,706	3,357
합계	5,949	15,577	19,406	17,521	14,82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주) Other live animals, dogs / HS Code : 0106199020

● 기타포유류 수입동향

(단위 : 천US\$)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캐나다	5,365	7,745	7,149	6,056	5,619
멕시코	-	5	337	962	566
네덜란드	309	212	216	22	304
덴마크	10	30	5	3	280
남아공	20	48	80	118	66
독 일	62	126	279	86	56
기 타	369	729	749	484	310
합 계	6,135	8,895	8,815	7,731	7,201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주) 1. Other live animals, Other / HS Code : 0106199095
 2. 고양이의 HS Code는 별도로 없으며 기타포유류에 포함

5_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

-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 그리고 각 카운티 혹은 시 정책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서로 다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경우 4개월 이상된 애완견은 수의사가 발급한 광견병 백신 접종과 함께 불임 시술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 마리당 지역에 따라 다른 비용을 내고 시에 애완견을 등록한 후 허가증(License)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개나 고양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각 주와 지역에 따라 해당되는 법률이 다르나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경우 목적에 관계 없이 \$120를 내고 분양 허가증(Breeding Permit)을 받아야 함. 또한 Kennel license가 없는 개인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를 분양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임

- 애완견이 만약 불임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비를 지불해야 함. 애완견을 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됨
- 최근 LA시는 애완동물과 관련된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결정. LA 시의회는 동물서비스국에 애완동물 관리규정을 위반한 소유주를 소환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애완동물이 이웃에 방해될 정도로 시끄럽게 짖거나 줄이 없이 거리를 돌아다닐 경우 소유주에게 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안 할 경우 최고 1년 동안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

■ 관련 법규 : 불임 「Los Angeles, California County Code」 참조

6_기 타

■ 관련 산업 동향 참고자료

- 미국 애완동물 용품 협회: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http://www.americanpetproducts.org>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http://www.kotra.or.kr>
- IBIS World: Industry Market Research Server
<http://www.ibisworld.com/>

■ 방문농장 및 애견샵

- Sam' s Kennel: English Bulldog 전문 애완농장
10811 Fort Tejon Rd. Littlerock, CA 93543

Tel. (661)944-2064
Sam (661)-877-8993
www.samsbulldogstoday.com

- 한미 애견 (Hanmi shop): LA 한인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애견샵
104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1-8882
Fax. (323)731-8883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목록 등

- 미국 동물 보호 단체: The Humane Society of United States:
<http://www.humanesociety.org>
- 미국 애완동물 학대 예방 협회: 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SPCA)
<http://www.aspca.org>
- 미국 수의사 협회: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http://www.avma.org>
- 미국의 동물보호소 리스트: Animalshelter.org
<http://www.animalshelter.org/shelters/states.asp>
- 미국의 개·고양이 애완동물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
http://www.animallaw.info/statutes/stuscacalfoodagcode30501_31683.htm

■ 국별 박람회 개최 현황

- Global Pet Expo : 803 전시자, 2250 부스, 3000 이상의 새로운 애완동물용품, 전 세계에서 오는 4495 애완동물 용품 바이어.
March 16-18, 2011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

Orlando, Florida

<http://globalpetexpo.org/Default.asp>

- Pet Expo USA: 서부의 애완동물 박람회

<http://petexpousa.net>

- Super Pet Expo: 동부의 애완동물 박람회

<http://www.superpetexpo.com/>

〈 불 임 〉

Los Angeles, California County Code

Title 10: Animals

10.20.010 License tags--Issuance--Fee.

Pursuant to 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30801) of Divisions 14 and 14.5 of the Food and Agricultural Code, the director shall issue serially numbered permanent dog and cat license tags marked with the name of the county of Los Angeles. (Ord. 2000-0075 § 23, 2000: Ord. 93-0002 § 2 (part), 1993: Ord. 85-0204 § 8, 1985: Ord. 9943 § 3, 1970: Ord. 9454 §1 (part), 1967: Ord. 7829 § 3, 1960: Ord. 4729 Art. 4 § 401, 1946.)

10.20.011 License--Issuance by veterinarians and other qualified persons in unincorporated areas of the county--Conditions.

The director may authorize the issuance of dog and cat licenses, as required by Section 10.20.010, by persons practicing veterinary medicine in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of Los Angeles County, or other persons approved by the director who meet the qualifications established by the department. Said persons shall transmit records and negotiable papers to the department of animal care and control at intervals as established by the director, and shall collect and transmit to the director the fees required by this chapter for the issuance of such licenses. The director may reimburse these businesses for such fees. (Ord. 2000-0075 §24, 2000: Ord. 93-0002 § 2 (part), 1993: Ord. 90-0089 § 5, 1990: Ord. 85-0204 § 9, 1985: Ord. 82-0163 § 2, 1982.)

10.20.020 Person deemed custodian when.

Any person keeping or harboring any dog or cat for 15 consecutive days shall be deemed to be the custodian thereof and subject to licensing provisions within the meaning of this Division 1. (Ord.

93-0002 § 2 (part), 1993: Ord. 87-0036 § 6, 1987: Ord. 9454 § 1 (part), 1967: Ord. 8043 § 4 (part), 1961: Ord. 4729 Art. 4 § 403, 1946.)

10.20.030 License--Required--Costs.

Every person owning or having custody or control of any dog or cat over the age of four months in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of the county of Los Angeles shall obtain an annual license from the director for each dog and cat and shall pay the fee for the licenses including delinquency charges and field enforcement fees as set forth in Sections 10.20.130 and 10.90.010. The owner or custodian of an animal found unlicensed by a department employee in the field will be charged a field enforcement fee. (Ord. 2009-0043 § 9, 2009; Ord. 93-0002 § 2 (part), 1993: Ord. 90-0137 § 11, 1990.)

10.20.035 Senior citizen--Defined--Reduced rates.

A reduced fee, as set out in Section 10.90.010, shall be charged to persons presenting proof of and qualifying for senior citizen statu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persons over 60 years of age qualify for senior citizen status. This reduced fee shall apply only to persons whose dogs have been spayed or neutered by a licensed veterinarian and can present a certificate of such sterilization. (Ord. 93-0002 § 2 (part), 1993: Ord. 90-0137 § 12, 1990: Ord. 87-0036 § 8, 1987.)

10.20.038 Residential dogs and cats--Limitations.

A. Dogs. Up to three dogs may be kept at any residence without an animal facility license, provided the dogs' owner or custodian licenses each individual dog and complies with the Mandatory Spay and Neuter Program for Dogs, 10.20.350 et seq.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service dog licensed under Section 10.20.090, is not counted toward the number of dogs kept or maintained, while such dog is serving a person who is disabled within the meaning of Government Code Section 12926(i) or Government Code Section 12926(k). B. Cats. Up to five cats may be kept at any residence without an animal facility

license, provided the cats' owner or custodian licenses each individual cat, has each cat spayed or neutered and keeps all cats primarily indoors. (Ord. 2009-0043 § 10, 2009.)

10.20.040 Kennel dogs and cats--Individual license required when.

An individual license shall be obtained for each dog or cat when such dog or cat is kept as a pet at an animal facility and is not kept exclusively in a kennel run or cage. (Ord. 2009-0043 § 11, 2009; Ord. 2000-0075 § 25, 2000; Ord. 93-0002 § 2 (part), 1993; Ord. 9454 §1 (part), 1967; Ord. 4729 Art. 4 § 420, 1946.)

10.20.045 Hobby breeding--License required--Fees.

A person who is a hobby breeder as defined in Section 10.08.155, shall obtain a hobby breeding license in the amount set forth in Section 10.90.010. Each license shall authorize the birth of no more than one litter per female dog or cat in any 12-month period and no more than one litter per domestic household in any 12-month period. Breeding in excess of that authorized under this Section requires a breeding facility license (See 10.08.065 and 10.40.200 et seq.) and may result in further penalties. (Ord. 2009-0043 § 12, 2009; Ord. 2004-0036 § 7, 2004; Ord. 93-0002 § 2 (part), 1993; Ord. 90-0137 §13, 1990; Ord. 88-0155 § 6, 1988; Ord. 87-0036 § 9, 1987; Ord. 85-0204 § 25, 1985.)

10.20.050 Exceptions from licensing requirement.

A. The provisions of this Division 1 do not require either a tag or a license for: 1. Any dog or cat found within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of the county when the owner thereof resides in any municipality within the county, and such dog or cat is wearing or has attached to it a license tag for the current year issued by such municipality; 2. Any dog or cat owned by or in the charge of any person who is a nonresident of the county and is traveling through the county or temporarily sojourning therein for a period of not exceeding 30 days; 3. Any dog or cat brought into the county and kept therein for not to

exceed 30 days for the exclusive purpose of entering the same in any bench show, or dog or cat exhibition, or field trials or competition;4. Any dog or cat brought or sent into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of the county from any point outside thereof for the exclusive purpose of receiving veterinary care in any dog or cat hospital, in the event that such dog or cat is kept at all times strictly confined within such hospital;5. Any dog or cat wearing or having attached to it a license tag for the current year issued by a municipality within the county when the owner thereof has, within one year last past, moved his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from such municipality to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of the county; provided, that such municipality similarly exempts from tag and license requirements dogs or cat wearing current county license tags and owned by persons who have moved from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of the county to such municipality.B. Except, that each guard dog found within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of the county, regardless of where the owner may reside, must have a Los Angeles County dog license; and the license tag must be securely affixed to the dog's collar while it is being used as a guard dog within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of the county of Los Angeles. (Ord. 93-0002 § 2 (part), 1993: Ord. 11135 § 1, 1975; Ord. 9454 § 1 (part), 1967: Ord. 8043 § 4 (part), 1961: Ord. 4729 Art. 4 § 407, 1946.)

10.20.060 Unvaccinated dogs or cat--Licensing permitted when.

The director may accept the payment of the fee for a license tag and a license for a dog or cat who has not been vaccinated as required by Division 1 on condition that the owner of such dog or cat, within five days thereafter, have such dog or cat vaccinated and submit the required veterinarian's certificate to the director. Upon receipt of such certificate, the director shall issue the license tag and license. (Ord. 93-0002 § 2 (part), 1993: Ord. 9943 § 6, 1970: Ord. 9454 § 1 (part), 1967: Ord. 8043 § 5, 1961; Ord. 4729 Art. 4 § 408, 1946.)

10.20.070 Unvaccinated dogs or cat--Time limit for vaccination when dog or cat is disabled.

A person who obtains a license without submitting a certificate of vaccination because of the infirmity or disability of the dog or cat shall, within 10 days after the termination of such infirmity or disability, cause such dog or cat to be vaccinated as required by Part 2 of this chapter. (Ord. 93-0002 § 2 (part), 1993: Ord. 9454 § 1 (part), 1967: Ord. 8043 § 8, 1961: Ord. 4729 Art. 4 § 413, 1946.)

10.20.080 License and license tag--Period of validity--Dogs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Each license and each dog license tag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for a dog which has been honorably discharged from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of indefinite duration, so long as the same individual owns or harbors the same dog. The fee shall be that specified in Chapter 10.90. (Ord. 93-0002 § 2 (part), 1993: Ord. 88-0155 § 2, 1988: Ord. 11177 § 1, 1975: Ord. 9454 § 1 (part), 1967: Ord. 4729 Art. 4 § 404, 1946.)

10.20.090 Service dog defined--License and license tag--Requirements--Period of validity.

A. "Service Dog" is a guide dog or seeing-eye dog which was trained by a person licensed under Chapter 9.5 (commencing with Section 7200) of Division 3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a signal dog or other dog individually trained to do work or perform tasks for the benefit of an individual with a disabil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uiding individuals with impaired vision, alerting individuals with impaired hearing to intruders or sounds, providing minimal protection or rescue work, pulling a wheelchair or fetching dropped items.B. Every person owning or having custody or control of a dog over the age of four months, who submits proof to the director that such dog has been successfully trained as a service dog as defined above in subsection A, shall procure a service dog license and a service dog

license tag, which license and tag shall be valid while the dog is acting as a service dog, and is owned and kept by the same person. The tag shall be returned to the Department by the owner or keeper of the dog upon transfer of ownership or possession of the dog, or upon the retirement or death of the dog. (Ord. 2004-0049 §§ 2, 3, 2004.)

10.20.110 License tag--Fee for spayed or neutered animals.

Pursuant to Section 30804.5 of the Food and Agricultural Code, any dog or cat license tag issued pursuant to Section 10.20.030 of this Part 1 shall be issued for one-half or less of the fee required if a certificate is presented from a licensed veterinarian that the dog or cat has been spayed or neutered. (Ord. 93-0002 § 2 (part), 1993: Ord. 11364 § 1 (part), 1976: Ord. 10961 § 2, 1974: Ord. 9454 § 1 (part), 1967: Ord. 4787 §1, 1946: Ord. 4729 Art. 4 § 421, 1946.)

10.20.120 Fees payable annually--Delinquency charge.

A. The license fees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shall be paid annually to the director in the amount set forth in Section 10.90.010.B. A delinquency charge as provided in Section 10.90.010 shall be assessed when the license fees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are not paid within ten days after the expiration date or the date the license is required to be obtained by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Ord. 2009-0043 § 13, 2009; Ord. 90-0137 § 15, 1990: Ord. 88-0155 § 7, 1988: Ord. 83-0182 § 5, 1983: Ord. 82-0163 § 3, 1982: Ord. 11945 § 2, 1979: Ord. 9943 § 4, 1970: Ord. 9454 § 1 (part), 1967: Ord. 4729 Art. 4 § 405, 1946.)

10.20.125 License fee not refundable.

No part of the license fee is refundable in any case. (Ord. 2009-0043 § 14, 2009.)

10.20.130 Recordkeeping and procurement of tags and receipts.

The director shall procure the number of license receipts and dog or cat license tags needed each year, and shall keep a register wherein

shall be entered the name and address of each person to whom any dog or cat license tag is issued, the number of such tag, the date of issuance thereof and a description of the dog or cat for which issued. (Ord. 93-0002 § 2 (part), 1993: Ord. 9943 § 5, 1970: Ord. 9454 § 1 (part), 1967: Ord. 8043 §4 (part), 1961: Ord. 4729 Art. 4 § 406, 1946.)

10.20.140 License--Vaccination requirements and conditions.

The director shall not issue a dog or cat license unless the applicant exhibits a certificate signed by a veterinarian, licensed either by the state of California or by any other state to practice veterinary medicine, that:A. The period elapsing from the date of vaccination with approved rabies vaccine to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license being issued does not exceed the time as established by the state; orB. Such dog or cat should not be vaccinated with rabies vaccine because such vaccination would jeopardize the health of such dog or cat due to infirmity or other disability, which infirmity or other disability, and the estimated date of termination thereof, is shown on the face of the certificate to the satisfaction of the director. (Ord. 93-0002 §2 (part), 1993: Ord. 85-0204 § 10, 1985: Ord. 83-0182 § 6, 1983: Ord. 10374 § 1, 1971; Ord. 10298 § 2, 1971: Ord. 9943 § 8, 1970: Ord. 9454 §1 (part), 1967: Ord. 4729 Art. 4 § 412, 1946.)

10.20.150 License--Information to be shown on receipt.

When the director issues a dog or cat license, he shall show on the receipt the age of the dog or cat, the date of last vaccination and, if the license was issued without proof of vaccination, the reason therefor. (Ord. 93-0002 § 2 (part), 1993: Ord. 85-0204 §11, 1985: Ord. 9943 § 9, 1970: Ord. 9454 § 1 (part), 1967: Ord. 4729 Art. 4 § 414, 1946.)

10.20.160 License and license tag--Transfer permitted when--Fee.

If, during a license period, a dog or cat is sold or title to the dog or cat is otherwise transferred to a new owner, such new owner may apply to the director for a transfer of such dog's or cat's tag and

license and pay a transfer fee as specified under Chapter 10.90. Upon receipt of such application and fee, the director shall recor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new owner. (Ord. 2000-0075 § 26, 2000: Ord. 93-0002 § 2 (part), 1993: Ord. 83-0182 § 7, 1983: Ord. 9943 § 11, 1970: Ord. 9454 § 1 (part), 1967: Ord. 4729 Art. 4 §419, 1946.)

10.20.170 Replacement of lost tags.

In case any license tag for an individual dog or cat is lost or destroyed, a duplicate thereof may be procured from the director upon the submission to the director of such proof as he may require and upon the payment therefor as specified under Chapter 10.90. (Ord. 93-0002 § 2 (part), 1993: Ord. 83-0182 § 8, 1983: Ord. 9943 § 10, 1970: Ord. 9454 § 1 (part), 1967: Ord. 6189 § 1, 1953: Ord. 4729 Art. 4 § 416, 1946.)

10.20.180 Tag to be worn by dog or cat.

A license tag for an individual dog or cat shall be securely affixed to a collar, harness or other device which shall at all times be worn by such dog or cat except while such dog or cat remains indoors or in any enclosed yard or pen. Alternatively, a cat may wear any form of identification approved under Chapter 10.90. (Ord. 2000-0075 § 27, 2000: Ord. 93-0002 § 2 (part), 1993: Ord. 9454 § 1 (part), 1967: Ord. 4729 Art. 4 § 415, 1946.)

10.20.185 Microchipping of dogs required.

All dogs over the age of four months must be implanted with an identifying microchip. The owner or custodian is required to provide the microchip number to the department, and shall notify the department and the national registry applicable to the implanted chip, of a change of ownership of the dog, or a change of address or telephone number. (Ord. 2006-0029 § 4, 2006.)

10.20.190 Keeping unlicensed dogs or cats prohibited.

A person, shall not harbor or keep, or cause or permit to be harbored or kept, any unlicensed dog or cat in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of the county of Los Angeles, or in any city in Los Angeles County which has adopted this Title 10. (Ord. 2000-0075 § 28, 2000: Ord. 93-0002 § 2 (part), 1993: Ord. 9454 § 1 (part), 1967: Ord. 4729 Art. 4 § 402, 1946.)

10.20.200 Counterfeit or imitation tags prohibited.

A person shall not attach to or keep upon any dog or cat, or cause or permit to be attached to or kept upon any dog or cat, any tag provided for in Section 10.20.010 of this chapter except a tag issued for such dog or cat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or attach or keep upon or cause or permit to be attached to or kept upon any dog or cat, or make or cause or permit to be made or have in possession, any counterfeit or imitation of any tag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Ord. 93-0002 §2 (part), 1993: Ord. 9454 § 1 (part), 1967: Ord. 4729 Art. 4 § 418, 1946.)

10.20.210 Removing tag from collar prohibited.

An unauthorized person shall not remove from any dog or cat any collar or harness or other device to which is attached a license tag, or remove such tag or other identification therefrom. (Ord. 2000-0075 § 29, 2000: Ord. 93-0002 §2 (part), 1993: Ord. 9454 § 1 (part), 1967: Ord. 4729 Art. 4 § 417, 1946.)

10.20.211 Spaying or neutering--Condition of sale--Deposit required.

As a condition to the sale or giving away of any cat that has not been spayed or neutered, the purchaser or recipient shall deposit with the department of animal care and control, at the time of the sale or giving away, an amount determined by the director to be sufficient to cover the costs of neutering or spaying the cat, but in no event shall such deposit exceed \$30.00. Such deposit is to be paid to a licensed veterinarian upon proof that he has performed the required neutering

or spaying operation within the time period as set forth in Section 10.20.214, and may include an amount necessary to recover any additional costs to the department under this chapter. (Ord. 93-0002 § 2 (part), 1993.)

10.20.212 Spaying or neutering--Disposition of funds by director.

Whenever,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any cat, the director shall receive a deposit to cover the costs of spaying or neutering, the money so received shall be deposited in a trust fund in the county treasury. (Ord. 93-0002 § 2 (part), 1993.)

10.20.213 Spaying or neutering--Deposit paid to veterinarian.

Whenever a cat has been spayed or neutered as provided herein, the depositor shall be entitled to have the deposit paid to the licensed veterinarian performing the above operation, or the director may return the deposit to the person purchasing or receiving the cat upon written statement or receipt from the licensed veterinarian that the cat has been spayed or neutered, and the director shall draw the necessary demand on the auditor therefor. (Ord. 93-0002 § 2 (part), 1993.)

10.20.214 Spaying or neutering--Deposit forfeited without proof of operation--Conditions.

Any cat over six months of age at the time it is sold or given away shall be spayed or neutered within 60 days, or the deposit shall be deemed forfeited. Any cat under six months of age at the time it is sold or given away shall be spayed or neutered within 60 days after reaching the age of six months or the deposit shall be deemed forfeited. The director may extend such time periods in writing upon the showing of good cause therefor. The age of the cat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At least 30 days before the end of the said 60-day period, or any written extensions thereof, the department shall send the purchaser notice by mail to the address on file with the department, informing the purchaser that

failure to furnish satisfactory proof of performance of the operation prior to the end of the 60-day period or its extension shall result in forfeiture of the deposit. If the notice has been sent and the allotted time has elapsed without satisfactory proof of performance of the operation, the deposit shall be forfeited and the director shall transfer such money from the trust fund to the county treasury. (Ord. 93-0002 § 2 (part), 1993.)

10.20.215 Spaying or neutering--Deposit refund conditions.

Whenever any cat which has been purchased from the department of animal care and control, while it was under the age of six months, dies or is destroyed prior to being spayed or neutered as required in this chapter, the purchaser shall be entitled to a refund upon presenting satisfactory proof to the director of such death or destruction, and the director shall draw the necessary demand on the auditor therefor. No refund shall be made, however, where death or destruction occurs following the time within which the aforementioned operation was required to be performed. (Ord. 93-0002 § 2 (part), 1993.)

Part 2 VACCINATION

10.20.220 Requirements generally.

A. Every person keeping, harboring, or having any dog or cat over four months of age in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shall cause such dog or cat to be vaccinated with rabies vaccine, by a person licensed by the state of California, or other state, to practice veterinary medicine, on or before the latest of the following dates:1. 15 days after first acquiring such dog or cat;2. 15 days after bringing such dog or cat into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of the county of Los Angeles.B. No person shall cause a dog or cat under the age of four months to be vaccinated with an approved rabies vaccine unless a veterinarian licensed by the state of California, or other state, determines that such vaccination is required to preserve the health or prevent the disability of such dog or cat. (Ord. 93-0002 § 3 (part), 1993; Ord. 88-0025 § 1,

1988: Ord. 87-0036 §10, 1987: Ord. 83-0182 § 9, 1983: Ord. 10298 § 3, 1971: Ord. 9454 § 1 (part), 1967: Ord. 4729 Art. 5 § 501, 1946.)

10.20.230 Revaccination time--Rabies vaccine.

Every person keeping, harboring, or having a dog or cat in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of the county which has been vaccinated with an approved rabies vaccine shall cause such dog or cat to be revaccinated within a period of not more than:A. 12 months after the dog's or cat's initial vaccination if the dog or cat was between four months and one year in age at the time of such vaccination;B. 36 months after each prior vaccination. (Ord. 93-0002 § 3 (part), 1993: Ord. 87-0036 § 11, 1987: Ord. 85-0204 § 12, 1985: Ord. 10298 § 4, 1971: Ord. 9454 § 1 (part), 1967: Ord. 4729 Art. 5 § 502, 1946.)

10.20.250 Certificate of vaccination--Information to be shown.

Every person practicing veterinary medicine in the unincorporated territory of the county of Los Angeles who vaccinates a dog or cat with rabies vaccine shall immediately issue to the person to whom he delivers the dog or cat the original, and monthly to the director a duplicate, of a certificate signed by the veterinarian which states: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or harbinger of the vaccinated dogs or cats;B. The kind of vaccine used, the name of the manufacturer and the manufacturer's serial or lot number, and the date of the vaccinations;C. The breed, age, color and sex of the vaccinated dogs or cats. (Ord. 93-0002 § 3 (part), 1993: Ord. 85-0204 § 13, 1985: Ord. 82-0163 § 4, 1982: Ord. 9454 § 1 (part), 1967: Ord. 4729 Art. 5 §504, 1946.)

10.20.262 County assistance to low-cost vaccination clinics.

The director may direct department personnel to provide or assist at low-cost vaccination clinics operated by veterinary associations as an adjunct to clinics operated by the department. The director may charge for the services of county personnel at low-cost vaccination clinics

operated by veterinary associations. This charge shall not include the time actually spent in the issuance of licenses. Rates shall be those established by the county auditor-controller. (Ord. 2000-0075 § 31, 2000: Ord. 93-0002 § 3 (part), 1993: Ord. 82-0239 § 1, 1982: Ord. 82-0163 § 5, 1982.)

Part 3 REGISTRATION OF DOGS BY BUSINESSES

10.20.270 Applicability of Part 3 provisions.

Every business establishment that uses a dog or dogs to work without supervision to deter and protect the business from unauthorized persons entering said business, is required to obtain a business license under this part, other than sentry dog companies having dogs registered pursuant to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21910. Businesses registered under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21910 are also required to obtain an animal facility license under Section 10.28.060. (Ord. 2009-0017 § 7, 2009: Ord. 11630 §1 (part), 1978: Ord. 4729 Art. 13 § 1300, 1946.)

10.20.280 Registration--Required for business establishments.

Every business establishment shall license, with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animal care and control, each and every dog subject to this Part 3. (Ord. 2009-0017 § 8, 2009: Ord. 11630 § 1 (part), 1978: Ord. 4729 Art. 13 § 1301, 1946.)

10.20.290 Inspection of business premises required annually--Fee.

Prior to the licensing of a dog, and business subject to this Part 3, the county shall inspect the business establishment premises so as to assure the adequate housing and care of the dog. The inspection fee set forth in Section 10.90.010.II.C.3 shall be paid annually upon inspection. (Ord. 2009-0017 § 9, 2009: Ord. 93-0002 § 4, 1993: Ord. 92-0056 §2, 1992: Ord. 87-0036 § 12, 1987: Ord. 11630 § 1 (part), 1978: Ord. 4729 Art. 13 § 1304, 1946.)

10.20.300 Registration--Information required.

The license issued to a business subject to this Part 3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A. The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both the business establishment and the dog's responsible owner or handler;B. The name of the dog;C. The license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dog;D. The time at which the owner or handler shall inspect the dog's physical condition, its surroundings, and to assure its food and water supply are adequate. Said inspection shall be twice in any 24-hour period, with each inspection no more than 15 hours from the previous inspection. (Ord. 2009-0017 § 10, 2009: Ord. 11630 §1 (part), 1978: Ord. 4729 Art. 13 § 1302, 1946.)

10.20.310 Sign required on premises--Contents.

Clear and legible signs shall be posted at each of the entrances to the business establishment having dogs licensed pursuant to this Part 3, which shall state that the dog and the business are licensed with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animal care and control and the location and telephone number of the nearest county animal shelter. (Ord. 2009-0017 § 11, 2009: Ord. 11630 § 1 (part), 1978: Ord. 4729 Art. 13 §1303, 1946.)

Part 4 MANDATORY SPAY AND NEUTER PROGRAM FOR DOGS**10.20.350 Mandatory spaying, neutering of dogs.**

A. No person may own, keep, or harbor a dog over the age of four months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An owner or custodian of an unaltered dog must have the dog spayed or neutered or obtain an unaltered dog license in accordance with Section 10.20.355.B. The owner or custodian of a dog which is unable to be spayed or neutered without a high likelihood of suffering serious bodily harm or death due to age or infirmity, must obtain written confirmation of that fact from a licensed veterinarian. The writing must also state the date by which the dog may be safely spayed or neutered. If the dog is unable

to be spayed or neutered within 30 days, the owner or custodian must apply for an unaltered dog license. (Ord. 2006-0029 § 5 (part), 2006.)

10.20.355 Unaltered dog license--Requirements.

An owner or custodian of an unaltered dog over the age of four months must obtain an annual unaltered dog license for the dog. The license shall be issued if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A. The dog is one of the following: a competition dog as defined in Section 10.08.095; a dog used by a law enforcement agency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a qualified service or assistance dog as defined in Section 10.20.090; or a dog which is unable to be spayed or neutered as set forth in Section 10.20.350 B; B. The owner or custodian has submitted the required application and has paid the fee set forth in Section 10.90.010(VI)(A); and C. The unaltered dog will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Los Angeles County Code Section 10.40.010, and with applicable state animal care and control laws. (Ord. 2006-0029 § 5 (part), 2006.)

10.20.360 Denial or revocation of unaltered dog license--Grounds and re-application.

A. The department may deny or revoke an unaltered dog license fo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easons: 1. The applicant or licensee is not in compliance with all of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0.20.355; 2. The department has received at least one complaint, verified by the complainant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applicant or licensee has allowed a dog to run loose or escape, or has otherwise been found to be neglectful of his or her dog or other animals; 3. The applicant or licensee has been previously cited for violating a state law, county code or other municipal provision relating to the care and control of animals; 4. The unaltered dog has been adjudicated by a court or an agency of appropriate jurisdiction to be a potentially dangerous or vicious dog, or to be a nuisance within the meaning of the Los Angeles County Code or under state law; 5. Any unaltered dog license held by the applicant has been revoked; 6. A female unaltered dog has

had more than one litter per year, or five or more litters in her lifetime; or 7. The license application is discovered to contain a material misrepresentation of fact. B. Re-application for unaltered dog license: 1. When an unaltered dog license is denied, the applicant may re-apply for a license upon a showing tha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0.20.355 have been met. The department shall refund one-half of the license fee when an application is denied. The applicant shall pay the full fee upon re-application. 2. When an unaltered dog license is revoked, the owner or custodian of the dog may apply for a new license after a thirty-day waiting period upon a showing tha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0.20.355 have been met. No part of an unaltered dog license fee is refundable when a license is revoked and the applicant shall pay the full fee upon re-application. (Ord. 2006-0029 § 5 (part), 2006.)

10.20.365 Appeal of denial or revocation of unaltered dog license.

A. Request for hearing. 1. Notice of intent to deny or revoke. The department shall mail to the owner or custodian a written notice of its intent to deny or revoke the license for an unaltered dog which includes the reason(s) for the denial or revocation. The owner or custodian may request a hearing to appeal the denial or revocation. The request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ten days after the notice of intent to deny or revoke is mailed. Failure to submit a timely written hearing request shall be deemed a waiver of the right to appeal the license denial or revocation. 2. Hearing officer.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by the director's designee. 3. Notice and conduct of hearing. The department shall mail a written notice of the date, time, and place for the hearing not less than ten days before the hearing date. The hearing date shall be no more than thirty days after the department's receipt of the request for a hearing. Failure of the owner or custodian or his or her agent to appear at the hearing will result in forfeiture of the right to a hearing. The hearing will be informal and the rules of evidence will not be strictly observed. The department shall mail a written decision to the owner or custodian within ten days after the hearing. The decision of the hearing officer shall be the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B. Change in location of dog. If the dog is moved after the department has issued a letter of intent to deny or revoke, but has not yet denied or revoked the license, the owner or custodian must provide the department with information as to the dog's whereabouts, including the current owner or custodian's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rd. 2006-0029 § 5 (part), 2006.)

10.20.370 Transfer, sale and breeding of unaltered dog.

A. Offer for sale or transfer of unaltered dog: An owner or custodian who offers any unaltered dog for sale, trade, or adoption must include a valid unaltered dog license number with the offer of sale, trade or adoption, or otherwise state and establish compliance with Section 10.20.350. The license and microchip numbers must appear on a document transferring the dog to the new owner. B. Transfer of unaltered dog: The owner or custodian of an unaltered dog over the age of four months, which is not a competition dog as defined in Section 10.08.095, must demonstrate compliance with Section 10.20.350 and 10.20.185 prior to the transfer, and must notify the department of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within ten days after the transfer. C. Notification of litter and sale or transfer of puppies: Within thirty days after a litter is born to a female dog, the owner or custodian of the female dog shall advise the department in writing of the number of live born puppies. When a puppy under the age of four months is sold or otherwise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the owner or custodian shall advise the department of the name and address of the new owner or custodian, and the microchip number of the puppy, if applicable, within ten days after the transfer. (Ord. 2006-0029 § 5 (part), 2006.)

10.20.375 Penalties.

Th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any provision of this part are as follows: A. First violation. A first violation shall be an infraction punishable by a fine not to exceed \$250. If the owner or custodian fails to correct the underlying cause of the violation within 30 days after

being notified of the violation, it shall be deemed a second violation. B. Second violation. A violation within a year of a first violation shall be deemed a second violation. A second violation is a misdemeanor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for a period not to exceed six months or by a fine not to exceed \$1,000, or by both such fine and imprisonment. Each subsequent violation within one year shall be considered an additional misdemeanor. (Ord. 2006-0029 § 5 (part), 2006.)

10.20.380 Impoundment of unaltered dog.

A. When an unaltered dog is impounded, the owner or custodian may reclaim the unaltered dog when one of the following occurs: 1. The dog is spayed or neutered by a department veterinarian at the expense of the owner or custodian. Such expense may include additional fees due to extraordinary care required; 2. The dog is spayed or neutered by another department approved veterinarian. The owner or custodian may arrange for another department approved veterinarian to spay or neuter the dog, and shall pay to the department the cost to deliver the dog to the chosen veterinarian. The cost to deliver the dog shall be based on the department's hourly rate established by the Auditor-Controller, billed in minimum one hour increments. The veterinarian shall complete and return to the department within ten days, a statement confirming that the dog has been spayed or neutered and shall release the dog to the owner or custodian only after the spay or neuter procedure is complete; or, 3. At the discretion of the director, the dog may be released to the owner or custodian if he or she signs a statement under penalty of perjury, representing that the dog will be spayed or neutered and that he or she will submit a statement within ten days, signed by the veterinarian, confirming that the dog has been spayed or neutered. 4. If the owner or custodian demonstrates compliance with Section 10.20.350.B. Costs of Impoundment. 1. The owner or custodian of the unaltered dog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sts of impoundment, which shall include daily board costs. 2. The costs of impoundment shall be a lien on the dog, and the unaltered

dog shall not be returned to its owner or custodian until the costs are paid. If the owner or custodian of an impounded unaltered dog does not pay the lien against the dog in full within fourteen days, the dog shall be deemed abandoned to the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Section 10.36.310. (Ord. 2006-0029 § 5 (part), 2006.)

10.20.385 Allocation of fees and fines collected.

All costs and fines collected under this part and the fees collected under Section 10.90.010 shall be paid to the department for the purpose of defraying the cost of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is Part 4. (Ord. 2009-0017 § 12, 2009: Ord. 2006-0029 § 5 (part), 2006.)

[관상조류]

1_ 시장 규모 및 산업동향

가. 시장규모

■ 최근 3개년 시장규모

● 미국인의 관상조류 보유현황

- 2009-2010 APPA(미국 애완동물 용품 협회 :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에서 실시한 전국 애완동물 소유자 조사에 의하면 전체 애완동물 보유율 중 새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였으나, 2008년 5%로 약간 줄어들

〈전체 애완동물 중 관상조류 비중〉

(단위 : %)

애완동물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새	6	6	7	6	6	6	5
개	37	39	39	39	39	39	39
고양이	32	32	34	34	34	34	33

자료원 : APPA

● 관상조류 보유 가정수의 변화

- 2009-2010 APPA에서 실시한 전국 애완동물 소유자 조사에 의하면 관상조류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수는 개나 고양이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수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2008년 기준 600만 가정으로 추정됨

〈관상조류 보유 가정수〉

(단위 : 백만)

애완동물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새	5.9	6.4	6.9	6.7	6.4	6.4	6.0
개	36.4	39.1	40.0	40.6	43.5	44.8	45.6
고양이	31.5	32.1	34.7	35.3	37.7	38.4	38.2

자료원 : APPA

- 미국 애완동물 시장은 점점 증가하여 2007년에는 412억 달러, 2008년에는 432억 달러, 2009년에는 455억 달러가 소비되었고 2010년에는 전년 대비 4.61% 증가한 약 477억 달러로 예상됨
- 2009년 미국 소비자들은 애완동물 관리, 양육을 위해 지출한 455억 달러 중 7.5%인 34억 달러를 애완동물 서비스로 지출했음
- 2010년 현재 미 전국의 애완동물 서비스 업체는 4만 7,277개로 총 매출액은 27억 2,400만 달러로 예상됨
- 2002년 애완동물 서비스 시장은 6,4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09/10년에는 7,140만 달러로 성장

■ 시장구성, 시장성장을 및 성장요인

- 미국내 가구수가 1988년에 9,230만 가구였으나 1998년 9% 증가한 1억 40만 가구로 증가하였음
-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에 의하면 미국내 전체가구의 약 63%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개를 기르는 가구수가 약 43백만, 고양이가 37백만, 조류가 4.3백만가구로 나타남
- 이러한 통계자료로 볼 때 미국내 애완동물 보유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 최근 APPA에서 실시한 2만여 명의 애완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경기침체에도

애완동물에 대한 지출액은 별 차이가 없으며 추후 소비 감소 계획도 없을 것이라 밝혀 미국인들이 애완동물을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애완동물 중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소유한 소비자들이 애완동물 용품과 서비스 구매에 가장 적극적이거나, 새를 소유한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임.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주로 근거리에 있는 업체를 애용하지만 원거리에 있더라도 지인들이 추천하거나 좋은 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전망 및 주요 성장요인

- 인구의 노령화
 -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함께 애완동물 관련 소비가 증가할 것임
- 애완동물의 건강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
 - 애완동물 액세서리와 식품에 대한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상향 구매현상이 일어날 것임
- 애완동물 관련 자선기관
 - 단체들에 내놓는 기부금이 서서히 증가할 것임
-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애완동물 관리와 서비스 산업이 발달했으며 불경기 여파로 침체된 시장 가운데서도 소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최근 꾸준한 성장을 함. 경기회복과 더불어 애완동물 시장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
- 애완동물 그루밍, 호텔 및 데이케어 서비스 이외에도 새롭고 다양한 애완동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애완동물 관리 기구나 호텔, 데이케어 관련용품과 기술 인력의 수요 증가 예상
- 그루밍과 호텔, 데이케어 서비스에 사용되는 장비나 용품들에 새로운 기술력을 더해 미국 시장에 수출을 꾀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존에는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주로 호텔, 데이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요즘에는 동물병원에서 의료, 그루밍, 호텔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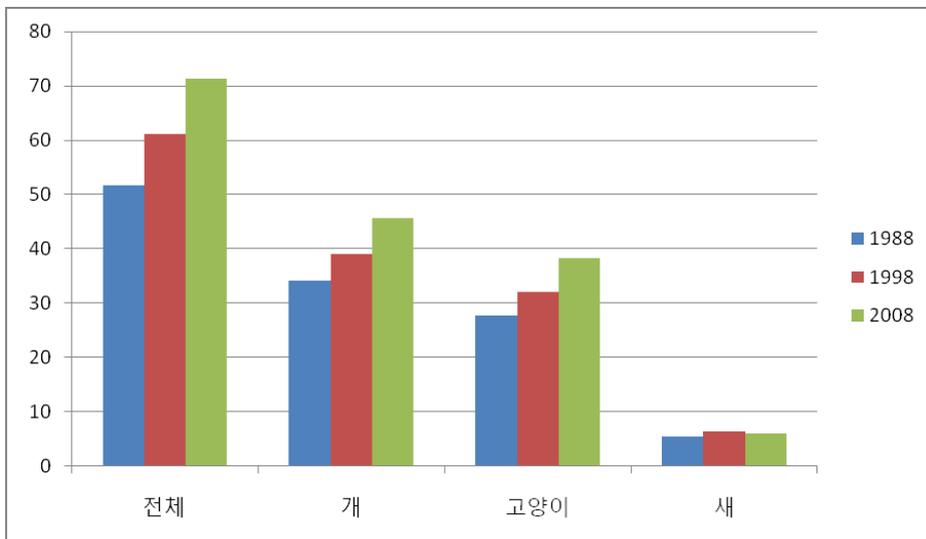
- 애완동물 사진관 등 다양하고 새로운 애완동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 만한 서비스를 개발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음

나. 산업 특성 및 동향

■ 산업특징 및 최근 트렌드

- 2009년 후반기를 시작으로 서서히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면서 애완동물 시장도 점차 되살아나기 시작
- 최근 몇 년 사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애완동물 미용 관리와 그루밍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조류를 애완동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또, 경기 침체로 가계 수입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애완동물 서비스 시장 역시 침체했음

〈애완동물 소유율 비교 (1988, 1998, 2008년)〉



- 하지만, 2009년 4분기에 미 애완동물 서비스시장 주도업체인 PetsMart와 PETCO 모두 매출 성장을 보이며 시장 회복세
- 주요 인기 서비스는 호텔, 그루밍, 데이케어
 - 1) 호텔 서비스
 - 대부분의 고객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소비자들이지만 조류, 말, 파충류, 어류 등 특별한 애완동물을 위한 서비스도 늘어가는 추세
 - 2) 데이케어 서비스
 - 주인의 부재시 애완동물이 혼자 있지 않도록 돌봐주는 보육 서비스 호텔과 데이케어를 함께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며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고객들이 주로 애용
- 미 애완동물 서비스시장의 대표적인 업체는 PetsMart Inc.와 PETCO Animal Supplies, Inc.로 미 애완동물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시장의 11%를 차지함.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 업체들로 이들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2009/2010 산업 경향
 - 1) 타 산업과 같이 애완동물 시장에서도 최근 유행은 친환경 제품이라 할 수 있음. 유기농 사료 외에 장난감, 액세서리, 냄새 제거제까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친 환경 전문 펫샵이나 온라인 웹사이트도 증가하고 있음. PetsMart, PETCO 등 대형 리테일러 업체들도 관련 제품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임
 - 2) 기존의 제품에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미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음



다양한 형태의 새 케이지 용품 (여행용/슬리핑용)



다양한 애완조류 관련 용품들

■ 산업 강약점 및 기회/위협요인

- 미국의 애완동물 산업은 성장 추세이나 한국에서 애완동물을 수입하기에는 제약이 많고 규정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
- 한국에서 조류 및 관련 상품 수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운반 등 제반 물류비
 - 관세 및 현지 법규 및 규정, 절차 등
 - 미국인과 납품업체가 선호하는 포장 및 영어 설명서
 - 가격 및 리드타임

■ 시사점 등

- 미국의 관상조류 시장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상승세가 유지되며 특히 사료, 간식, 각종 관련 용품들의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직접적인 조류 수출보다는 애완동물 용품 개발 및 포장에 신경 써서 수출을 하는 편이 더 승산이 있음. 특히 세련된 디자인과 아이디어 용품의 개발 및 꾸준한 관련 전시회 참가로 바이어의 신뢰를 얻어 직접 진출하거나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경제적임

2_ 생산동향

■ 품종 육성 및 관리

- 새의 종류는 수천 종이 있으나 그 중 인기 있는 품종은 앵무새, 카나리아류, 잉꼬새, 비둘기, 피리새 등이 있음

앵무새류		
		
녹색앵무새	파란앵무새	검은모자앵무새
피리새류		
		
지브라핀치	소사이어티핀치	스타핀치
		
오렌지치크핀치	콜던블루핀치	실버빌핀치
비둘기류		
		
다이아몬드도브	화이트도브	핑크링넥도브

카나리아류



레드카나리아



옐로우카나리아



팬시카나리아

■ 미국의 5대 인기 애완새 종류

1) 자생잉꼬새 / Budgies



- 일반적인 앵무새의 일종이며 아름다운 색상으로 인기가 좋으며, 적은 공간으로 유지 관리하기가 용이함. 아주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이어서 대부분 두 단어 정도를 할 수 있음. 평균 수명은 12~14년임

2) cockatiels



- 중간 크기로 앵무새류이며 구관조로 알려져 있고, 임의의 소리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음. 수명은 평균 15~20년 사이

3) 피리새류 및 카나리아

- 대부분의 품종은 5인치 정도의 크기로 적은 공간이 필요함. 사람에게 별로 집중하지 않아 관상용으로 좋음. 수명은 최대 10년

4) 모란 잉꼬

- 앵무새 종 중 하나이며, 아름답고 작음. 약 6인치 정도의 크기이며, 수명은 최대 20년임

5) 아프리카 회색

- 어휘 2,000 단어까지 말 할 수 있는 똑똑한 새임. 수명은 일반적으로 50~70년임

■ 관련 단체 등

● 미국 조류 협회

- American Birding Association (ABA)

www.aba.org

Tel. 1800-850-2473

Tel. 1-719-578-9703

● 애완동물 관련 협회

- Pet Care Services Association (American Boarding Kennel Association)

Humane Society of America

ASPCA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3_ 유통실태

가. 유통현황

■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 농장에서 생산되는 애완동물은 크게 세 가지의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 1) 생산자 → 소비자
 - 2) 생산자 → 소매상 → 소비자
 - 3) 생산자 → 유통기관(브로커/로컬 브로커) 소매상 → 소비자

■ 판매방법

- 생산농가(Breeder)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광고를 통해 연락해 온 소비자가 직접 방문 후 판매
 - 주로 생산농가의 개인 웹사이트에 광고
 - 현재 있는 관상조류와 미래에 취급할 관상조류 정보
 - 관상조류의 사진

■ 전문점/인터넷 동향

- 애완동물 서비스 시장의 대표적인 업체는 PetsMart Inc와 PETCO Animal Supplies, Inc로 미 애완동물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시장의 11%를 차지함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업체들로 이들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PetsMart, In. (www.petsmart.com)



- 진출정책 및 절차 : 유통체인 본사를 직접 접촉하여야 하거나, 세일즈 에이전트를 통하여 해당품목 바이어와 접촉하여야 함. 한국내 바잉 오피스는 현재 없음
- 시장점유율 : 7.0%
- 애완동물 관련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최대의 전문 유통망으로 1987년에 애리조나에 설립. 미국과 캐나다에 1,149개의 매장을 운영중이고,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많은 120개의 매장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텍사스, 플로리다 순임
- PetSmart 브랜드나 공급자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며, 조류 관련 판매액은 전체 매출의 8%를 차지하고 있음
- 미 전체의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2009년에는 전년대비 총 판매액이 5.4% 증가했으며 2009년 4분기에만 1.5% 매출 증가를 보이며 총 수입액은 3.4% 상승함

■ PETCO Animal Supplies, Inc. (www.petco.com)



- 진출정책 및 절차 : 유통체인본사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세일즈 에이전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벤더 가입 절차를 따라야 함. 한국내 바잉 오피스는 현재 없음
- 시장 점유율 : 3.2%
- 2008년에 8,300만 달러, 2009년에는 8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
- 조류 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 1965년 샌디에이고에 설립돼 2010년 현재 미 전국에 850개의 소매 매장이 운영중이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동물용품 체인 유통망임

■ Superpetz



- 1991년 오하이오에서 시작한 펫전문점으로 현재까지 21개의 대형 체인점을 갖고 있음
- 대부분의 애완 조류는 인터넷보다는 매장에서 직접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소규모의 판매 혹은 입양을 위해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웹사이트들이 있음

■ 연간 매출규모

- 2010년 미국 애완동물 시장 규모는 총 477억 달러로 추산되며 애완동물 용품 판매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2007-2010 미국 애완동물 시장 규모>

연도	2007	2008	2009	2010 예상비용
시장 규모 (US\$)	412억	432억	455억	477억

자료원 : APPA

나. 구매 및 소비특성

■ 주소비자

- 애완동물을 기르는 소비자들은 아이가 없거나, 독신남, 독신녀, 가족의 구성원이 적은 경우가 주고객임
- 애완동물을 소유한 경우는 인종별로는 백인이 가장 많았고, 개인주택을 렌트해서 사는 경우보다 소유한 경우가 많았음

〈미국 애완동물 가정별 소유, 비소유자 비교 현황('08)〉

(단위:%)

구 분	미국인	현재 소유자	전 소유자	비 소유자
총응답자	31,677명	19,530명	1,625명	9,656명
어린이				
18세 이하 어린이	32	38	36	19
아이가 없는 경우	68	62	64	81
가정의 구성원				
1명	27	19	27	42
2명	34	34	32	34
3명	16	18	18	11
4명	14	17	14	8
5명 이상	9	12	9	5
가족 구성				
보통 가정	69	76	68	55
가족이 아닌 자와 동거	31	24	32	45
독신녀	14	12	15	27
독신남	12	7	11	22

■ 관상조류 구매행태

〈관상조류를 구입하는 방법('08)〉

(단위 : %)

구 분	애완새
친구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34
새 판매 전문점 (스페셜티 스토어)	23
일반 애완동물 가게 (펫 스토어)	17
대형 애완동물 판매점 (펫 슈퍼스토어)	8
선물 (기프트)	7
신문	5
포획	5
기존 애완새 소유자로부터	4
동물보호소	2
인터넷	-
수의사	-

자료원 : APPA

-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와 거래
 - 친구 또는 친인척 등을 찾아가서, 또는 신문 등 광고를 보고 직거래
- 소비자가 소매점에 가서 구매
 - 생산자가 소매상에 판매 후 소비자가 다양한 소매점에서 구매
-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구매는 아직 활발하지 않음

■ 소비자 의식 및 소유동향

- 미국 사회는 독신자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기르는 풍조가 널리 퍼지면서 애완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애완동물 시장도 성장 추세임. 7천만 명의 애완동물 주인들이 애완동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2천만 명의 주인들은 애완동물의 생일파티를 차려주는 등 미국인들은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연간 지출규모

- 2008 APPA 전국 애완동물 소유자 조사에 따르면 관상조류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연간 721달러를 지출함

<연간 관상조류를 위한 지출 규모>

(단위 : 달러)

분류	금액
정기검진을 위한 수의사 방문 비용	128
수술을 위한 수의사 방문 비용	55
새장	178
음식	123
트레이닝	46
장난감	43
비타민	26

분류	금액
책	18
그루밍	38
약	21
총합계	721

자료원: APPA

- 관상조류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년 2회 정도 수의사를 방문하며, 이를 위해 연간 183달러를 지출함

<연간 관상조류를 위한 수의사 방문>

(단위 : \$, %)

분류	새
정기검진을 위한 수의사 방문 비용	\$128
수술을 위한 수의사 방문 비용	\$55
수의사 방문사유	
정기검진	62%
접종	8%
질병	22%
음식	50%

자료원: APPA

다. 가격동향

■ 품종, 원산지별 수입가격, 도소매가격, 유통마진, 소비자가격 등

- 소비자 유통 가격대
 - 카나리아 : \$25 ~ \$150, 피리새류 : \$10 ~ \$100, 모란잉꼬 : \$75 ~ \$200, 앵무새류 : \$100 ~ \$300

- 판매 가격은 공산품처럼 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며, 조류의 털 색깔 및 외모 등에 따라 가격대의 차이가 있는 편임

라. 기타 특이사항

- 멀티펫 소유자들

<관상조류 소유 미국인의 멀티펫 보유율(>

개	고양이	물고기	소형동물	파충류	말
9	8	15	18	19	15

자료원 : APPA

- 개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소유자가 새를 애완동물로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8~9%였으나, 파충류와 말, 소형동물 등 기타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가 평균 14%~19%로 새를 복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음
- 미국 애완동물 용품 판매가 전체 애완동물 시장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획기적인 상품들이 시장에 선 보이고 있는 추세임

4_ 수출입동향

- HS 코드 및 관세율

Code	품명	내역	관세율
0106320000	Live Animals	앵무새류	1.8%
0106390000	Live Animals	기타조류	1.8%

출처 : 미국 관세청

■ 수출입동향

● 앵무새류 (Live animals, Psittaciformes)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캐나다	-	17	7	6	54
남아공	43	-	-	-	-
네덜란드	13	-	-	-	-
벨기에	17	-	-	-	-
합 계	73	17	7	6	5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주) HS Code : 0106320000

● 기타조류 (Live animals, Other Birds)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호 주	102	286	281	205	295
대 만	408	514	498	377	244
벨기에	441	536	351	175	150
세네갈	-	-	114	125	124
탄자니아	212	4	60	106	86
네덜란드	144	25	88	56	73
기 타	1,529	1,214	736	589	364
합 계	2,836	2,579	2,128	1,633	1,336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주) HS Code : 0106390000

5_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

- 모든 조류는 건강하고 인도적인 조건하에 통관이 되어야 함
 - 미농무부(USDA) 규정에 의해 적당한 공간과 통풍이 가능한 케이지 캐리어와 함께 수입되어야 하며, 멸종위기에 있는 종류는 수입이 금지됨
- 조류를 미국에 수출시에는 외부포장에 이름,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는 송장 및 관련 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대부분의 조류가 미농무부 동물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아래의 세 곳의 격리 시설에 30일간 격리되어야함
 - 뉴욕 (718) 553-1727
 - 마이애미 (305) 526-2926
 - 로스앤젤레스 (310) 725-1970
- 조류를 수입하기 전에 상기 검역센터에 연락을 하고 검역 수수료 전액을 미리 지불하여야 하며, 미국 항구에서 미농무부 항만담당 수의사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함
-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 그리고 각 카운티 혹은 시 정책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서로 다르며, 캐나다에서 수입되어지는 새는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음
- 대부분의 시에서는 키우던 새가 죽으면 개인집 마당에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묘지에 묻어야 함

■ 한국의 수출업체가 주목해야 할 점

- 트렌드를 읽을 것
 - 1) 애완동물 관련제품 상향 구매할 경향
 - 2) 미국의 인구가 노령화 되고 자녀를 대신해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계속 늘어날 전망
 - 3)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 유통
 - 4) 애완동물 관리산업이 발달할 것임

- 새 수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들
 - 1) 새의 심리적인 면
 - 2) 새의 라이프 사이클 : 장례식까지 고려
 - 3) 판로 개발 : 현지 유통업자를 모색

6_기 타

■ 관련 산업 동향 참고자료

- 미국 애완동물 용품 협회: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http://www.americanpetproducts.org>
- IBIS World: Industry Market Research Server
<http://www.ibisworld.com/>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목록 등

- 미국보건서비스 U.S. Public Health Service
<http://www.cdc.gov> Tel. (404) 498-1670
- 미국동식물건강검사서비스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Technical Trade Services
<http://www.aphis.usda.gov/NCIE> Tel. (301) 734-8226
- 미국 동물 보호 단체: The Humane Society of United States:
<http://www.humanesociety.org>
- 미국 애완동물 학대 예방 협회: 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SPCA)
<http://www.aspca.org>

- 미국 수의사 협회: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http://www.avma.org>
- 미국의 동물보호소 리스트: Animalshelter.org
<http://www.animalshelter.org/shelters/states.asp>

[관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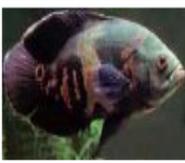
1_ 시장규모 및 산업동향

■ 관상어 개요 및 종류

- 관상어 산업이라 함은 관상용 저장 수조에 채워 넣을 각종 어류뿐만 아니라 수초류와 조개류 등을 포함하는 생산, 유통관련 산업을 말하며 관상어는 크게 민물에서 주로 양식되는 담수어류(Freshwater Fishes)와 바다에서 포획되거나 해수로 양식되는 해수어류(Marine Fishes)로 나누어짐

● 대표적인 관상어 종류

구 분	잉어	금붕어	열대어		
형 상					
영어명	Koi	Goldfish	Discus	Suckermouth Catfish	Guppy
특 징	크기:10cm~40cm 수온:화씨55~80도	크기:2,5cm~12cm 수온:화씨70도	크기:2cm~8cm 수온:화씨75~84도	크기:5cm부터 수온:화씨71~82도	크기:1cm~3cm 수온:화씨83도

구 분	열대어				
형 상					
영어명	Angelfish	Oscar	Swordtail	Molly	Tetra
특 징	크기:1,5cm~8cm 수온:화씨75~84도	크기:5cm이상 수온:화씨79~86도	크기:1cm~3cm 수온:화씨83도	크기:2,5cm~5cm 수온:화씨77~86도	크기:2cm~5cm 수온:화씨77~82도

■ 관상어 세계 시장 규모

- 2001년 FAO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기준 세계 관상어 시장규모는 도매 기준으로 900백만불, 소매 기준으로 3,000백만불 규모로 추산하고 있음(자료 : FAO State of World Aquaculture 2006)
- 세계적인 관상어산업은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약 50%가 생산됨
- 담수어종의 양식기술은 완숙단계로 양식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수어 양식은 아직 초기단계로 생산 가능 수준도 매우 제한적임
- 담수어 관상어의 육종이나 번식의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을 비롯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임
- 최근의 경향은 양식 산업이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력 시장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함. 예를 들면 유럽마켓은 체코, 스페인, 벨기에,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에서 생산된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관상어 산업

- 관상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취미 활동의 하나이며, EU(유럽연합)이 최대 시장이나,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최대시장을 형성하고 있음(FAO 1996~2005; Chapman 2005)
- 미국의 관상어 산업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의 선호 추세와 구매력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연령층 진입에 따른 분재, 양란선호 추세와 함께 가장 보편적인 취미생활로 정착됨에 따라 매년 10%대의 성장을 하는 있는 유망 산업임
 - Baby Boomer 세대 : 2차대전 후 1945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인구의 28%(약 76백만명)를 점하고 있으며, 전후 미국의 성장을 주도한 세대로 안정적인 세대로 구매력이 높고, 분재, 양란, 비단잉어 등 아시아 문화에 대한 선호가 강함

- 최근에는 열대어를 주인공으로 하는 어린이 만화영화의 영향과 해수어 양식 기술과 양식 설비산업의 발달로 초기단계인 해수 관상어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층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관상어 시장규모 추정

- 2007년 기준 미국의 전체 관상어 생산액은 51.2백만불(2005년 기준), 수입액은 43.1백만불, 수출액은 11.2백만불로 국내 소비 규모는 양식장 및 수입업체 생산 및 수입가격 기준으로 83.1백만불 규모이나, 소매 기준으로는 400~500백만불 규모로 추산됨
- 비단잉어의 경우에는 생산액 5.0백만불, 수입액 6.9백만불로 국내 소비규모는 11.9백만불 규모이나 소매 기준으로는 60백만불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2_ 미국의 관상어 생산동향

■ 미국의 관상어 양식 현황

- USDA NASS(정부농업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내 관상어 양식 산업의 규모는 2005년 기준 358개 양어장이 있으며, 총 생산액은 51,297천불을 기록하고 있음
- 1998년 대비 전체 양식장 수는 3.8% 증가하였으나, 생산액은 25.6%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비단잉어는 로컬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적고 품질이 떨어져 High End 제품인 일본산 비단잉어 등 고급어종의 수입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됨
- 관상어는 플로리다를 비롯한 미 전역 41개 주에서 생산이 되며 최대 생산지역인 플로리다 주는 미국 전체 양어장 수의 34.5%, 생산액의 6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하와이, 알칸사스, 인디애나 등이 주요 생산지역임

- 플로리다 주는 양식산업이 주요산업중의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133개 양식업체가 700여 종의 관상어를 생산하여 33백만불이 생산되었으며, 소매 기준 시장규모는 생산액의 3.7배 수준인 122백만불로 추산하고 있음
- 주요생산 지역별 양식장 수와 생산액

(단위 : 개소, 천불)

지 역 별	1998년		2005년		비 고
	양식장 수	생산액	양식장 수	생산액	
합 계	345	68,982	358	51,297	
플로리다	171	56,197	133	33,232	
하와이	30	690	17	자료미공개	
캘리포니아	12	1,701	22	자료미공개	
알칸사스	15	1,594	16	2,813	
인디애나	10	1,055	7	자료미공개	
노스캐롤라이나	6	179	6	104	
오하이오	9	86	18	326	
미시간	6	35	6	자료미공개	
알라베마	5	349	3	자료미공개	
기 타	81	7,096	130	자료미공개	

■ 양식장의 규모

- 2005년 기준 양식장의 규모는 1,000천불 이상 출하하는 양어장이 10개소로 전체 생산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 ~ 1,000천불 규모는 14개소에 19.6%를 차지하고 있어 상위 24개 양어장이 전체 생산액의 66.0%를 점유하고 있음

● 양식장 규모

생산규모별(천불)		25미만	25~50	50~100	100~500	500~1,000	1,000이상
1998년	양어장(개소)	169	44	44	60	16	12
	생산액(천불)	1,094	1,536	2,909	13,273	9,852	40,319
	비율(%)	1.6	2.2	4.2	19.2	14.3	58.4
2005년	양어장(개소)	200	38	35	61	14	10
	생산액(천불)	1,257	1,347	2,310	12,534	10,046	23,804
	비율(%)	2.4	2.6	4.5	24.4	19.6	46.4

■ 어종별 양식현황

- 1988년 기준(최근통계 없음) 생산어종별 통계를 보면 전체 관상어 중 열대어가 82.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붕어 9.8%, 비단잉어는 5.7%를 차지하고 있음
-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은 열대어종을 중심으로 양식하고 있으며,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지역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지역은 비단잉어와 금붕어류를 주로 생산하고 있음
- 관상어 어종별 생산현황(1998년도)

(단위: 개소, 천달러)

구 분	잉 어		금붕어		열대어		기타관상어		합 계	
	양어장	생산액	양어장	생산액	양어장	생산액	양어장	생산액	양어장	생산액
북동부	26	2,139	14	2,843	5	미공개	4	미공개	34	5,130
남 부	47	971	24	1,592	165	55,146	20	870	225	58,578
북중부	26	592	17	1,544	6	미공개	6	미공개	38	2,844
서 부	10	206	6	미공개	6	825	4	미공개	18	1,740
하와이	6	35	4	미공개	10	495	14	미공개	30	690
합 계	115	3,943	65	6,749	192	57,145	48	1,145	345	68,982
(%)		5.7		9.8		82.8		1.7		100.0

3_ 유통 및 소비 현황(서부지역 주품종인 비단잉어 중심)

■ 미국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잉어 종류

형 상						
이 름	KOHAKU	TAISHO SANKE	SHOWA SANSHOKU	UTSURI MONO	BEKKO	ASAGI SHUSUI
특 징	흰색 바탕에 적색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남	흰색 바탕에 적색, 흑색무늬가 나타남	흑색바탕에 적색, 흰색무늬	흑색바탕에 흰색, 적색, 황색무늬	다른색바탕에 흑색무늬가 들어감	흑색바탕에 지느러미 부분만 적색
변 종	shimuji, akamuji, akahjiro, menkaburi, hanatsuki, nidan,sandan, yondan, inazuma	tsubo-sumi, kasane-sumi, aka sanke, tsubaki sanke, doitsu sanke fuji sanke	boke showa, hi showa, kindai showa	shiro utsuri, ki utsuri, hi utsuri, doitsu utsuri	aka bekko, shito bekko, ki bekko, doitsu bekko	konjo asagi, narumi asagi, mizu asagi, taki asagi, hana shusui, ki shusui

<p>영 상</p>						
<p>이 름</p>	<p>KOROMO</p>	<p>KAWARI MONO</p>	<p>HIKARIMONO</p>	<p>HIKARI MOYO-MONO</p>	<p>HIKARI UTSURI</p>	<p>TANCHO</p>
<p>특 징</p>	<p>asagi 와 kohaku잡종</p>					
<p>변 종</p>	<p>aigoromo, sumigoromo, budo sanke, koromo sanke, koromo showa</p>	<p>karasugoi, hajiro, kigoi, chagoi, showa shusui, kanoku sanke, kage utsuri</p>	<p>yamabuki, hi ogon, kin matsuba, doitsu ogon, kin kabuto</p>	<p>hariwake, dotisu, platinumkoha ku shochikubai, kujaka, tora</p>	<p>gin shiro, kin ki utsuri, kin&gin shows</p>	<p>tancho kohaku, tancho sanke, tancho showa</p>

■ 유통 상황

- 미국의 양식 관상어는 다양한 수입산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를 주 경쟁국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국내 양식어종과 유사한 관상어를 수출하기 때문임. 이들 국가는 저렴한 인건비 등 생산원가의 경쟁력으로 저가의 관상어를 대량 수출하고 있음
- 제품의 특성상 유통단계를 거칠 때마다 상당량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커버하기 위해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음. 예를 들면 양식장에서 \$0.15에 출고된 관상어는 북부지역 Pet Shop에서 \$2.89에 판매되어 무려 20배나 상승하는 경우도 있음

■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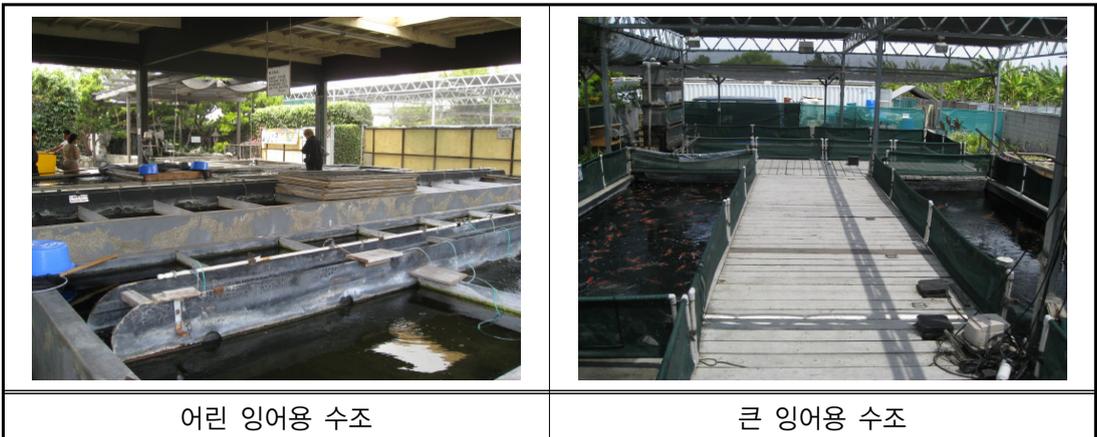
- 국내 생산 관상어 : 양식장 → Local Buyer/Distributor → Wholesaler/ Retailer(Pet Shop, Garden Shop 등)
- 수입산 관상어 : 수출국 양식업체 → 수입업체/Dealer → Wholesaler/ Retailer(Pet Shop, Garden Sho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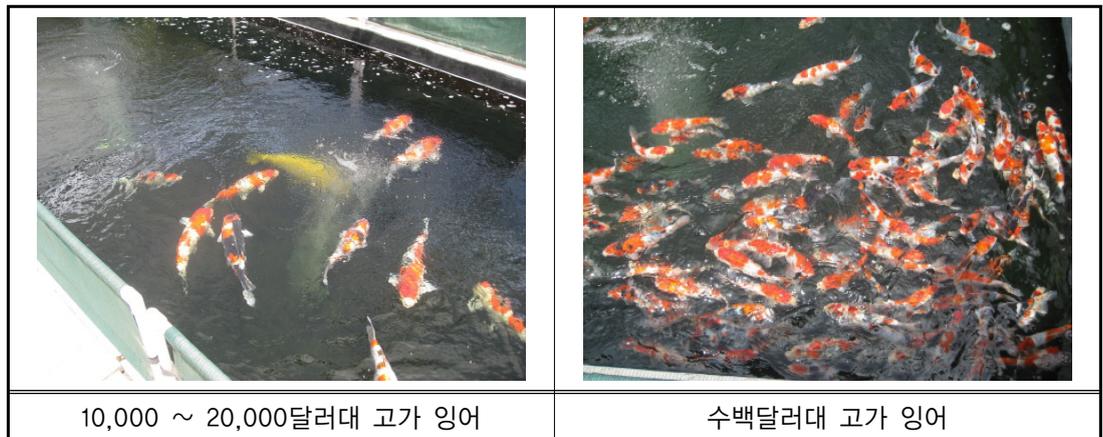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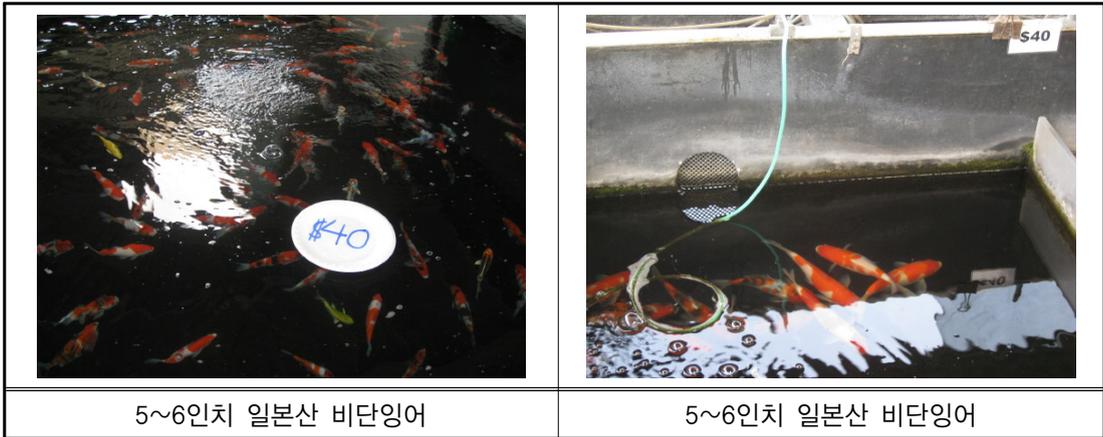
■ 소비경향 및 용도

- 비단잉어의 경우에도 선호되는 유행품종이 있어 유행되는 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음
 - 최근의 선호 품종은 Kohaku, Sanke, Showa, Utsuri 등임
- 비단잉어의 소비층은 비율별로 보면 백인소비자 50%, 아시안 45%, 히스패닉과 흑인 5% 정도 차지
- 용도는 고급어종인 일본 수입산 품종은 'Show Fish'라 하여 고가에 거래되며, 주로 일본으로부터 직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맑은 물만 들어있는 수조 또는 어항에 넣어 기르고 고기자체를 감상하는 용으로 사용됨
- 반면 저가품인 현지생산 잉어나 동남아산 수입잉어는 저가 품종으로 'Water Garden Fish'로 분류되며 뒷마당이나 연못형태로 꾸며진 수조 속에 연꽃, 수초 등이 심어진 연못 또는 수조 속에 기르는 것이 일반적임
- 일반적인 관상어 소비자들은 중저가품을 선호하며, 지역별로 위치한 Petco나 Petsmart와 같은 애완동물용품 체인점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문이 이루어짐

■ 일본산 비단잉어의 수입 및 유통

-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소규모 업자를 제외하고 약 25개의 비단잉어 전문 Dealer가 있으며, 소규모 업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매우 많음
- 서부지역의 수입업체/Dealer들은 일본산 잉어 수입을 위해 매년 4차례에 걸쳐 일본의 양식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고기실물을 보고 구입을 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함
- 방문시기는 봄과 가을이며, 봄(3월~4월)에는 작은 사이즈의 어린잉어를 집중 구입하고 가을(10월-11월)에는 큰 사이즈의 성숙한 잉어를 구입하고 있음
- 비단잉어의 경우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는 마켓이 다르며, 작은 사이즈는 주로 초보자용으로 Petco, Petsmart 등을 체인망을 통해 판매되기도 하는 반면, 큰 사이즈는 애호가용 또는 동양정원용으로 전문 Dealer(Koi Farm)를 통해 거래됨
- 미국내 대부분의 Dealer들은 수조를 가지고 있으며 Breeder와 Dealer로 구분할 수 있으며, Breeder는 일본 수입산을 구입하거나 취급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일본계 품종을 육종을 통해 생산하여 공급하는 반면 순수 Dealer는 일본산을 직접 수입 판매하는 역할을 함
- 캘리포니아 대표적인 일본 비단잉어 Dealer인 Asahi Koi Farm





■ 일본산 비단잉어의 주 소비시기

- 비단잉어의 주소비시기는 봄과 가을로 봄(3월~4월)에는 작은 사이즈의 소비가 많고, 가을(10월~12월)에는 큰 사이즈의 소비가 많은 반면 1월~2월과 8월~10월 초는 소비가 저조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음
- 일본산 비단잉어의 수입시 포장은 물과 산소를 넣은 비닐백 속에 비단잉어를 넣고 카톤 박스로 포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항공편으로 운송(주로 30파운드 또는 50파운드 박스 사용)

구분	박스 크기	박스 무게	비고
4 large koi (12"-17")	28인치x13인치x12인치	40-50 lbs	
40 small koi ("4-8")	28인치x13인치x12인치	40-50 lbs	

■ 서부지역의 비단잉어 유통가격

- 비단잉어의 가격기준은 잉어의 혈통, 색상, 색상의 패턴, 물고기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가격의 폭이 커 일반적인 가격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불가능함
- 비교적 중저가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대중적인 제품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U\$)

구분	크기	소매가격			비고
		어류전문점	PetCo	인터넷 전문점	
비단잉어	3-4인치	8.99	3.99-5.99	15.99	
	5-6인치	12.99	12.99-14.99	39.99	
	6-8인치	15.99	-	65.99	
	8-10인치	24.99	-	115.99	
	10-12인치	45.99	-	-	
	15인치	1500	-	1000	
	20인치	-4000	-	-2500	
	1인치	0.60	0.12	-	
	2인치	0.99	0.26	-	
	3인치	1.99	3.99	7.99	
금붕어	6인치	8.99	14.99	-	
	8인치	22.99	-	-	

■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

- 관상어 Dealer들은 자사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박람회, 콘테스트, 취미 동호회 운영을 통한 정보 교류 및 관련 전문잡지 발행, 인터넷을 활용한 판촉 활동 등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
 - ※ 전문잡지 : Koi world, Aquarium, ponds & water garden 등
 - 전문서적 : The Professional's book of Koi, GOLDFISH 등
- 비단잉어(Koi)의 경우 미국의 비단잉어협회(Associated Koi Clubs of America)는 전국에 104개의 비단잉어 지부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KOIUSA라는 비단잉어 전문지는 애호가들이 애독하는 대표적인 홍보 매체임



● 미국 관상어, 열대어 행사현황

일 시	행 사	장 소	연 락 처
2008년 2월	 21st Annual Sandiego Koi Show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전화:619-713-2633
2008년 3월	34th Annual ZNA Southern California Koi Show & Festival	캘리포니아주 가디나	전화:818-207-3238
2008년 5월	 Backer's Annual Pet Industry Spring Trade Show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전화:312-578-1818 팩스:312-578-1819
2008년 9월	 Marine Aquarium Conference of North America	조지아주 아틀란타	팩스:860-540-2351
2008년 9월	 MAKC 20th Koi Show & 4th Goldfish Show	메릴랜드주 웨스트민스터	전화:410-848-6704
2008년 10월	 Backer's Annual Pet Industry Christmas Trade Show	일리노이주 시카고	전화:312-578-1818 팩스:312-578-1819
2009년 3월	 Global Pet Expo	플로리다주 올랜드	

4_ 관상어 수출입 현황

가. 수입현황

■ 관상어 수입 현황

- '09년 미국의 관상어 수입액은 39,113천불로 전년도 44,233천불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관상용 어류의 질병유입 방지 등의 검역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국가별 상위 15개국 모두 전반적으로 수입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며 호주와 브라질산 등의 수입은 증가하였음
 - 싱가포르 : ('07) 8,223천불 → ('08) 8,501 → ('09) 7,242
 - 태 국 : ('07) 7,889천불 → ('08) 7,371 → ('09) 6,633
 - 인도네시아 : ('07) 4,895천불 → ('08) 5,401 → ('09) 5,212
 - 호 주 : ('07) 482천불 → ('08) 692 → ('09) 706
 - 브라질 : ('07) 334천불 → ('08) 298 → ('09) 602
- '09년 미국의 한국으로부터 관상어 수입액은 41천불로 '08년도 2천불보다 급증하여 수입국 순위는 38위를 차지
 - 수입액 : ('07) 3천불 → ('08) 2천불 → ('09) 41천불

■ 비단잉어 수입현황

- 비단잉어는 일본 등 40여 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준으로 2,449천불이 수입되었으며 일본이 전체 수입금액의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관상어 HS Code 및 관세

구분	HS 번호	관세	비고
비단잉어	0301100010	없음	
금붕어	0301100020	없음	
해수관상어	0301100090	없음	

■ 수입현황

● 미국의 관상어 수입 현황(HS 030110, 살아있는 관상용 물고기 전체)

(단위 : 천US\$)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위	합계	46,014	48,354	43,147	44,233	39,113
1	싱가포르	8,420	9,087	8,223	8,501	7,242
2	태국	8,392	8,539	7,889	7,371	6,633
3	인도네시아	5,301	5,314	4,895	5,401	5,212
4	스리랑카	1,520	2,118	1,969	3,366	2,797
5	필리핀	4,122	3,921	3,483	3,605	2,713
6	일본	2,523	3,022	2,943	2,195	1,865
7	홍콩	3,275	3,051	2,092	1,893	1,547
8	중국	1,275	1,176	1,392	1,295	1,283
9	대만	1,224	1,393	1,165	1,178	1,072
10	말레이시아	1,415	1,528	1,415	1,290	1,015
11	호주	1,287	886	482	692	706
12	브라질	325	305	334	298	602
13	이스라엘	303	451	730	771	579
14	콜롬비아	963	804	701	735	520
15	하이티	235	219	332	468	493
38	한국	40	22	3	2	41

자료 : 미농무성 BICO, 2010 Global Trade Atlas(GTA)

● 미국의 관상어 수입 현황(HS 0301100010, 비단잉어)

- 비단잉어(Koi carp, 학명 : Cyprinus carpio)

(단위 : 천US\$)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위	합계	-	9,860	6,830	3,547	2,449
1	일 본	-	1,402	2,518	1,980	1,745
2	말레이시아	-	106	635	580	378
3	대 만	-	287	159	145	106
4	이스라엘	-	54	139	66	81
5	태 국	-	1,247	422	108	65
6	한 국	-	-	-	2	31
7	홍 콩	-	436	226	67	25
8	독 일	-	104	-	-	5
9	콜롬비아	-	107	143	13	5
10	호 주	-	210	123	-	4
11	멕시코	-	-	-	11	3
12	탄자니아	-	-	8	-	2
13	사우디 아라비아	-	45	8	-	-
14	브라질	-	75	43	-	-
15	싱가포르	-	1,598	301	209	-

자료 : 미농무성 BICO, 2010 Global Trade Atlas(GTA)

- 미국의 관상어 수입 현황(HS 0301100020, 금붕어, 붕어)
 - 금붕어(Gold Fish, 학명 : Carassius auratus)
 - 붕어(Crucian carp, 학명 : Carassius carassius)

(단위 : 천US\$)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위	합계	-	248	4,348	5,096	4,214
1	싱가포르	-	26	1,169	1,427	1,071
2	태 국	-	2	980	1,159	1,044
3	중 국	-	22	895	1,122	928
4	홍 콩	-	191	971	1,059	839
5	말레이시아	-	-	150	323	320
6	일 본	-	-	64	6	9
7	대 만	-	-	-	-	3
8	베트남	-	-	2	-	-
9	필리핀	-	-	2	-	-
10	호 주	-	7	-	-	-
11	아이슬란드	-	-	4	-	-
12	이스라엘	-	-	48	-	-
13	인도네시아	-	-	63	-	-

자료 : 미농무성 BICO, 2010 Global Trade Atlas(GTA)

● 미국의 관상어 수입 현황(HS 0301100090, 기타 물고기)

(단위 : 천US\$)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위	합계	-	12,030	31,969	35,591	32,449
1	싱가포르	-	2,533	6,753	6,864	6,171
2	태 국	-	2,782	6,487	6,104	5,524
3	인도네시아	-	1,109	4,250	5,248	5,212
4	스리랑카	-	624	1,832	3,349	2,797
5	필리핀	-	575	2,759	3,501	2,713
6	대 만	-	408	1,006	1,033	964
7	호 주	-	286	359	692	703
8	홍 콩	-	877	895	767	682
9	브라질	-	89	291	298	602
10	콜롬비아	-	214	559	722	515
11	이스라엘	-	92	543	704	498
12	하이티	-	84	330	468	493
13	케냐	-	116	524	465	474
14	마셜제도	-	25	90	267	429
15	페루	-	32	177	293	390
44	한 국	-	-	3	-	10

자료 : 미농무성 BICO, 2010 Global Trade Atlas(GTA)

나. 수출현황

- '09년도 미국의 관상어 수출액은 8,995천불로 전년도 9,058천불 대비 1% 감소하였으며, 수출 점유율은 캐나다를 비롯한 10대 수출국가가 전세계 수출액의 93%(8,324천불)를 차지

- 10대 수출국 점유율(%) 현황

수출국가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독일
점유율	48.87%	8.76%	6.65%	5.86%	5.49%
수출국가	홍콩	네덜란드	대만	브라질	이태리
점유율	4.74%	4.0%	3.02%	2.81%	2.31%

- 한국으로의 '09년도 수출액은 85천불로 '08년도 40천불보다 212% 증가하여 12번째 수출국임

- 수출액 : ('07) 72천불 → ('08) 40천불 → ('09) 85천불

- 미국의 관상어 수출 현황(HS 030110, 살아있는 관상용 물고기 전체)

(단위 : 천US\$)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위	합계	5,774	5,882	7,309	9,058	8,995
1	캐나다	3,497	3,293	3,861	4,752	4,396
2	영국	550	562	670	811	788
3	중국	58	45	4	419	599
4	일본	446	311	568	601	527
5	독일	144	123	196	455	494
6	홍콩	196	357	180	377	427
7	네덜란드	200	239	470	303	360
8	대만	83	191	159	218	272
9	브라질	85	244	282	159	253
10	이태리	5	53	98	176	208
11	프랑스	121	62	21	15	104
12	한국	5	25	72	40	85
13	싱가포르	32	53	182	163	60
14	말레이시아	4	9	39	51	54
15	벨기에	-	3	12	26	41

자료 : 미농무성 BICO, 2010 Global Trade Atlas(GTA)

■ 통관 절차

- 관세청(관세납부여부검사) ⇒ 동식물검역소(수입허가증 발행: VS-135)
⇒ 야생물서비스(수입허가증 발행 : FWS 3-200-3, FWS 3-177)

(1) 관세청 통관(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 통관 서류 신청 → 검사(보안검사, 무역검사) → 관세율 분류 평가 → 통관

(2) 동식물검역소(Animal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허가 및 통관

- Spring Viremia of carp(SVC) 질병에 걸리기 쉬운 8가지 살아있는 Finfish(관상용 : 비단잉어, 금붕어, 식용 잉어 : Grass carp, Silver carp, Bighead carp, Crucian carp, tench, 식용 메기 : sheatfish)는 동식물검역소의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함
- 필요 서류
 - 수입허가증(Import Permit)
 -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s)
- 문의처 : USDA, APHIS, VS/ National Center for Import and Export
4700 River Road, Unit 39/ Riverdale, MD 20737
전화 : 301-734-3277, 팩스 : 301-734-6402
- 수입허가증(Import Permit) 신청 방법
 - 관상어 수출시 수입허가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수입허가신청서류(VS 17-129) 신청후 수입허가증(VS-135)을 받아야 함
 - 수입허가증:USDA's National Center for Import and Export, Unit 38
4700 River Rd., Riverdale, MD 20737-1231
 - 신청서 다운
http://www.aphis.usda.gov/import_export/downloads/vs17_129.pdf
 - 발급소요기간 : 5-10일소요 / 신청비용 : US\$94.00

● 위생 증명서(Health Certificate)

- 관상어 수출시 수출국의 가축위생국에서 발행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미국 도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받아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 위생증명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조항

- Spring Viremia of carp(SVC) 질병이 없다는 증명서

동 SVC 질병검사를 신뢰할수 있는 검역소에서 최소 2회/매년 이상 했다는 내용과 반드시 샘플 검사는 epithelioma papulosum cyprini (EPC) 또는 fathead minnow (FHM) cell lines 검사 방법으로 해야 함

- 관상어 양식장은 수출국 관계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Spring Viremia of carp(SVC) 질병 검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

- 수출품에 SVC 질병이 없음을 확인한 검역을 면허있는 수의사 또는 수출국에서 인정한 관계자가 **수출 72시간전 시행**했다는 내용

- 수출품 운송 컨테이너가 새 것이거나 또는 깨끗이 청소되고 소독된 것이어야 함

● 지정된 미국 항구에서 검역을 받아야 함(항구명)

- **Los Angeles, CA**; San Francisco, CA; Miami, FL; Tampa, FL; Atlanta, GA; Honolulu, HI; Chicago, IL; Boston, MA; Detroit, MI; Newark, NJ; Buffalo-Niagara, NY; **New York, NY**; Portland, OR; Dallas-Ft. Worth, TX; Seattle, WA; Sumas, WA; Otay Mesa, CA, and San Juan, PR.

- **미 항구도착 72시간 전 각 항구의 수의검역국에 통보**

- 검역비 : US\$84/시간당
- 수의검역국 서비스 사무실 연락처

California: Dr. Kevin P. Varner USDA, APHIS, VS 10365 Old Placerville Road Suite 210 Sacramento, CA 95827-2518 Import/Export Program (916) 854-3900 Fax (916) 363-1125 Administration (916) 854-3950 Fax (916) 363-3919 VSCA@aphis.usda.gov	New York: Dr. Roxanne Mullaney USDA, APHIS, VS 500 New Karner Road 2nd Floor Albany, NY 12205 (518) 869-9007 Fax (518) 869-6135 Roxanne.C.Mullaney@usda.gov
--	---

<p>Florida: Dr. Robert E. Southall USDA, APHIS, VS 7022 NW 10th Place Gainesville, FL 32605-3147 (352) 333-3120 Fax (352) 333-6849 VSFL@aphis.usda.gov</p>	<p>New Jersey: Dr. Jonathan Zack USDA, APHIS, VS Mercer Corporate Park 320 Corporate Blvd. Robbinsville, NJ 08691-1598 (609) 259-8387 Fax (609) 259-2477 Jonathan.T.Zack@usda.gov</p>
<p>Georgia: Dr. Edgardo Arza USDA, APHIS, VS 1498 Klondike Rd., Suite 200 Conyers, GA 30094 (770) 922-7860 Fax (770) 483-9000 Edgardo.Arza@usda.gov</p>	<p>Michigan: Dr. Reed Macarty USDA, APHIS, VS 3001 Coolidge Road, Suite 325 East Lansing, MI 48823 (517) 324-5290 Fax (517) 324-5289 Reed.E.Macarty@usda.gov</p>
<p>Hawaii and Washington: Dr. Gary L. Brickler USDA, APHIS, VS 2604 12th Court, SW, Suite B Olympia, WA 98502 (360) 753-9430 Fax (360) 753-9585 Gary.L.Brickler@usda.gov</p>	<p>Massachusetts: Dr. William G. Smith USDA, APHIS, VS 160 Worcester-Providence Road Sutton Square Plaza, Suite 20 Sutton, MA 01590-9998 (508) 865-1421, 22 Fax (508) 865-9317 William.G.Smith@usda.gov</p>
<p>Illinois: Dr. Lennis Knight USDA, APHIS, VS 2815 Old Jacksonville Rd., Suite 104 Springfield, IL 62704 (217) 862-6689 Fax (217) 862-6695 Lennis.C.Knight@usda.gov</p>	<p>Texas: Dr. Paul O. Ugstad USDA, APHIS, VS Thornberry Bldg., Rm. 220 903 San Jacinto Blvd. Austin, TX 78701 (512) 383-2400 Fax (512) 916-5197 VSTIX@aphis.usda.gov</p>
<p>Oregon: Dr. Don Herriot USDA, APHIS, VS 530 Center St., NE, Suite 335 Salem, OR 97301 (503) 399-5871 Fax (503) 399-5607 Don.E.Herriott@usda.gov</p>	<p>Puerto Rico: Dr. Miguel A. Borri-Diaz USDA, APHIS, VS IBM Building 654 Munoz Rivera Avenue, Suite 700 Hato Rey, PR 00918 (787) 766-6050 Fax (787) 766-5159 Miguel.A.Borri-Diaz@usda.gov</p>

(3) 야생물서비스국 (Fish and Wild Life Service) 통관

- 비단잉어, 금붕어 등 관상어는 미국 수출시 야생물 서비스국 수입 허가필요
- 수입허가증(Import/Export License, FWS 3-200-3)/1년마다 갱신 필요
 - 수입신고서(Declaration for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fish or wild life, FWS 3-177)
- 지정된 미국 항구에서 검역필요(항구명)

Anchorage, AK P.O. Box 190045 Anchorage, Alaska 99519 907/271 6198; 907/271 6199 fax	Louisville 601 Broadway, Suite 115-A Louisville, Kentucky 40202 502/582-5989; 502/582-5981 fax
Atlanta, GA 4341 International Parkway, Suite #104 Atlanta, Georgia 30354 404/763-7959; 404/366-7031 fax	Memphis 3150 Tchulahoma Ave. Suite #6 Memphis, Tennessee 38118 901/544-3694; 901/544-3696
Baltimore, MD P.O. Box 8776 BWI Air Cargo Complex Building F, Suite 1500 Baltimore, MD 21240 410/ 694-9590; 410/694-9594 fax	Miami, FL 6601 N.W. 25th Street, Rm. 134 Miami, Florida 33172 305/526-2994 or 2620; 305/526-7480 fax
Boston, MA 70 Everett Avenue, Suite 315 Chelsea, MA 02150 617/889-6616; 617/889-1980 fax	New Orleans, LA 2424 Edenborn, Room 100 Metairie, Louisiana 70001 504/219-8870; 504/219-8868 fax
Chicago, IL Wildlife Inspection Program 10600 Higgins Road, Suite 200 Rosemont, IL 60018 847/298-3250; 847/298-7669 fax	New York, NY 70 E. Sunrise Hwy. #419 Valley Stream, New York 11580 516/825-3950; 516/825-3597 fax
Dallas/Ft. Worth, TX 1717 West 23rd, Suite 105 DFW Airport, Texas 75261 972/574-3254; 972/574-4669 fax	Newark, NJ 1210 Corbin St SeaLand Bldg, 1st Fl. Elizabeth, New Jersey 07201 908/787-1321; 908/787-1334 fax

<p>Houston 16639 W. Hardy Houston, Texas 77060-6230 Cargo Office 281/230-7225; 281/230-7227 fax</p>	<p>Portland, OR 7000 NE Airport Way, Rm C2732 Portland, Oregon 97238 503/231-6135; 503/231-6133 fax</p>
<p>Honolulu, HI 3375 Koapaka St. #B296 Honolulu, Hawaii 96819-1867 808/861-8525; 808/86- 8515 fax</p>	<p>San Francisco, CA 1633 Old Bayshore Hwy., Ste. 248 Burlingame, California 94010 650/876-9078; 650/876-9701 fax</p>
<p>Los Angeles, CA 370 Amapola Ave. #114 Torrance, California 90501 310/328-6307; 310/328-6399 fax</p>	<p>Seattle, WA 2580 South 156th Street Seattle, Washington 98158 206/764-3463; 206/764-3485 fax</p>

● 야생물 서비스국 문의처

<p>Region 1: California, Guam, Hawaii, Idaho, Nevada, Oregon, & Washington</p> <p>U.S. Fish & Wildlife Service Office of Law Enforcement 911 NE 11th Avenue Portland, OR 97232-4181 Tel: (503) 231-6125 Fax: (503) 231-6197 Email: permitsR1LE@fws.gov</p>	<p>Region 2: Arizona, New Mexico, Oklahoma, & Texas</p> <p>U.S. Fish & Wildlife Service Office of Law Enforcement 500 Gold Avenue, SW Suite 9021 Albuquerque, NM 87102 Mailing Address: P.O. Box 329 Albuquerque, NM 87103 Tel: (505) 248-7891 Fax: (505) 248-7901 Email: permitsR2LE@fws.gov</p>
<p>Region 3: Illinois, Indiana, Iowa, Michigan, Minnesota, Missouri, Ohio, & Wisconsin</p> <p>U.S. Fish & Wildlife Service Office of Law Enforcement P.O. Box 45 - One Federal Drive Fort Snelling, MN 55111-0045 Tel: (612) 713-5356 Fax: (612) 713-5283 Email: permitsR3LE@fws.gov</p>	<p>Region 4: Alabama, Arkansas,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ississippi,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Puerto Rico, & Tennessee</p> <p>U.S. Fish & Wildlife Service Office of Law Enforcement 1875 Century Blvd, Suite 380 Atlanta, GA 30345 Tel: (404) 679-7195 Fax: (404) 679-7065 Email: permitsR4LE@fws.gov</p>

<p>Region 5: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Delaware,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Rhode Island, Vermont, Virginia, & West Virginia</p> <p>U.S. Fish & Wildlife Service Office of Law Enforcement 70 E. Sunrise Hwy, Suite 419 Valley Stream, NY 11580 Tel: (516) 825-3950 Fax: (516) 825-3597 Email: permitsR5LE@fws.gov</p>	<p>Region 6: Colorado, Kansas, Montana, Nebraska, North Dakota, South Dakota, Utah, & Wyoming</p> <p>U.S. Fish & Wildlife Service Office of Law Enforcement P.O. Box 492098 Attn: Wildlife Inspector (DIA) Denver, CO 80249 Tel: (303) 342-7430 Fax: (303) 342-7433 Email: permitsR6LE@fws.gov</p>
<p>Region 7: Alaska</p> <p>U.S. Fish & Wildlife Service Office of Law Enforcement 1011 E. Tudor, Mail Stop-151 Anchorage, AK 99503-6199 Tel: (907) 786-3311 Fax: (907) 786-3313 Email: permitsR7LE@fws.gov</p>	

5_ 한국산 관상어 수입 상황

- 한국산 관상어는 최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단잉어가 아닌 기타 관상용 활어로 수출되고 있음

(단위 : Kg, U\$)

구 분	1999	2004	2005	2006	2007
물 량	3,454	506	710	293	640
금 액	60,517	80,155	118,827	207,182	396,895

- 그러나 미국 상무성 수입통계에는 관상어 중 비단잉어에 해당하는 0301.10.00.10에는 통관기록이 없으며, 기타 관상어 종류인 0301.10.00.90에만 3천불의 통관실적이 있어 미국상무성의 수입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 차이의 발생사유는 비교적 통관이 덜 까다로운 기타 활어로 분류하여 통관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타 활어 0301.99.01.99의 경우 '07년 2,374천불의 통관 실적이 있음)
- 한국산 관상어는 진천산이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 지역에 소재한 Simon Koi Farm(대표 : 정태훈)에서 약 12년 전부터 금붕어류와 비단잉어류를 수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비단잉어류임
- 한국산 비단잉어의 품종은 일본에서 육종된 품종으로 품질은 미국내 유명 Koi Show에서 입상하는 등 일본산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일본 Koi 문화와 마케팅 파워에 눌려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태임
- 대부분의 일본 수입 Koi를 취급하는 전문업체는 일본산만 독점적으로 취급하며, 현지산이나 타국산을 취급할 경우 업체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한국산에 대한 관심은 미미함
- 수입시 포장은 물과 산소가 든 플라스틱 백에 관상어를 넣고 카튼 박스 25Kg 단위로 포장하고 있으며, 4 ~ 5인치 사이즈의 경우 약 80 ~ 90마리가 들어감
- 자체 수조를 가지고 있으며 방문하는 Dealer들에게 보여 주고 Dealer를 통해 도매로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한국산만 취급하며 주로 5 ~ 6인치의 소형 잉어를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현지 마케팅의 리스크를 우려하여 대형 고가 잉어는 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산을 취급하는 바이어는 주로 세크라멘토나 텍사스 등 중소도시 지역의 미국계 Dealer로 자체 수조와 판매장을 확보하여 고급제품으로 판매함. 5 ~ 6 inch 사이즈의 경우 마리당 \$30에 판매되어 Petco 등 체인점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저가 제품보다 2배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음
- 한국산의 품질은 미국산이나 동남아시아 수입산보다 우수하나 일본산의 그늘에 가려 Dealer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물량이 소량으로 별다른 마케팅 활동이 없어 판로 확대 애로

6_ 수출확대방안 (비단잉어 중심)

■ 한국산의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절실

- Koi Show 등 전시회, 품평회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산이 일본산에 버금가는 고품질의 High End 제품임을 홍보하여야 함
 - 대부분의 Koi Dealer들은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현지산이나 동남아산과 같은 중저가의 Water Garden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지의 한국산 전용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필요

- 대부분의 고품질 Koi는 Dealer들이 일본으로 가서 양식되는 실물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한국으로 Dealer들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주 소비시장에 전시장을 설치하여 Dealer들이 실물을 보고 구매함으로써 한국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설치 지역은 시장이 크고,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유류비 등 비용이 적게 드는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하는 것이 유리
- 현재에는 현지 마케팅 리스크 때문에 고가의 큰 잉어보다는 중저가의 5~6인치 사이즈의 소형 잉어 중심으로 수입하여 시장 규모가 적음
- 현지 투자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지에 시설을 보유한 Dealer들과의 공동 투자 또는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안도 가능

■ 초기에는 일본산과의 경쟁을 피하는 마케팅 필요

- 대형 일본 Koi Dealer들의 진출이 적은(경쟁이 낮은) 중부나 남부지역 등의 전문 Dealer 발굴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유력 바이어 초청 양식현장 방문 및 수출상담 지원

■ Koi Show, 품평회 참가 지원

- 지역별도 다양하게 개최되는 Koi Show 참가를 적극 지원하여 한국산의 인지도 제고 및 바이어 발굴 도모

[곤충류]

1_ 시장 규모 및 산업동향

가. 시장규모

■ 시장구성, 시장성장을 및 성장요인

- 애완곤충 및 식용곤충의 집단생산, 체험을 통한 소득 증대하는 산업 및 관광자원임
- 식용가치 곤충 3,600종 중 370종이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 지구상 현존하는 생물중 가장 많은 생물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음. 현존하는 150만종 이외에 앞으로도 수백만종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다양한 종류가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뛰어난 생존능력을 갖고 있음
- 곤충유래생체활성물질 발굴시 검출된 물질은 식품, 의약소재, 산업바이오소재 등으로 활용 되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 곤충의 행동이나 기능을 이용하여 생체 모방기술이나 군사용 무기체계의 개발에도 이용되는 등 곤충은 활용범위가 다양함

■ 향후 전망

- 누에를 이용한 양잠산업의 경우 본래의 산업에서 탈피하여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개발 전환
- 유용곤충을 사육하거나 대량생산해서 생체가공하여 유통판매
- 곤충을 표본으로 제작하여 교육용 및 연구용으로 판매함

- 사육용 곤충의 먹이 및 사육상자 등을 생산하여 판매
-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 박람회, 축제행사 등의 이벤트 사업 또는 곤충을 이용한 생태체험 및 교육사업을 전개

나. 산업 특성 및 동향

■ 산업특징 및 최근 트렌드

- 곤충을 산업공학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곤충의 뛰어난 감각 능력 이용
 - 곤충은 정밀기계에서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미량의 정보를 정확하게 즉석에서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곤충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외선이나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감지하여 자신의 행동에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화합물의 한 분자만을 냄새 맡아도 화합물의 종류를 가려내는 곤충들도 있음. 이런 능력을 지닌 곤충을 이용하여 지뢰탐지 등 인간이 활동이 극히 위험한 곳에서 탐지 활동을 수행하게 하려는 연구가 최근 수행되고 있음
- 곤충이 갖는 구조와 기능 모방
 - 곤충뿐 아니라 생물의 모양이나 구조를 모방하고 응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바이오미메틱스(biomimetics), 즉 생체모방공학이라고 함
 - 인류는 자연을 모델로 삼아 많은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가 새와 물고기를 연구하여 하늘을 나는 기계와 선체를 설계하였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이미 다윈(Darwin)은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구조물이라고 칭찬한 벌집은 정말 놀라울 만큼 가벼우면서도 강함. 그래서 벌집의 6각형 형태는 현재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에서 벽걸이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액정화면의 구조, 무선이동 통신의 기지국

설계 등에 응용되고 있음

- 곤충의 뇌신경시스템은 척추동물보다 상당히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이나 학습능력 등 고도의 기능을 가짐. 이 때문에 인간이 포함된 고등동물의 뇌기능을 해명하는 모델시스템으로서 주목되어 최근 그 관련 연구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이러한 연구는 생체실험이 불가능한 뇌기능에 관한 의학분야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맛이나 냄새의 감지와 관련된 제어시스템 개발 등 공학적 응용면의 발전성도 큼

■ 산업 강약점 및 기회/위험요인

● 생체 모방기술

- 곤충의 행동과 기능을 이용하는 생체모방기술이 차세대 미래기술로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음. 미국은 일찍부터 곤충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음
- 곤충을 키우고 직접 이용하는 1차 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첨단바이오기술과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차세대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곤충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 전통적으로 이용된 약용 곤충들

- 약용곤충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그 효능과 유효성분을 분석하는 연구가 최근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음
- 천연물화학, 질환모델동물을 이용한 검정기술과 활성물질 탐색 체계가 갖춰지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에 새로운 용도가 잇따라 밝혀지고 있으며 지렁이의 경우 여러 제약회사에서 혈액순환 개선제로 상품화했고 굼벵이는 간질환 개선제로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음
- 벌레 시체에서 자란 버섯인 동충하초와 병해충인 반묘, 죽은 누에인 백강잠, 그밖에 굼벵이와 거머리, 지네, 전갈, 거미는 수많은 곤충들이 인간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 시작. 1백여 종 이상의 곤충에서 고지혈증과 당뇨, 비만, 항암, 간질환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활성물질들을 찾아내 그 성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의약품과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곤충 연구에 뛰어들고 있음

- 농업에 이용
 -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줄고 연중 내내 가동하는 농법이 급격히 보급되면서 천적곤충과 화분매개충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 환경친화적인 해충방제용 곤충바이러스를 얻는 데는 숙주곤충이 이용되고 있음. 그밖에도 식용곤충과 낚시 미끼, 가축사료로 쓰이는 곤충, 축산폐기물을 먹는 환경정화용 곤충, 특정 잡초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방제용 곤충이 있음. 가축분뇨를 먹어치우면서도 스스로 먹이가 되기도 하는 가축먹이용 곤충은 현재 성업중임
- 풍부한 곤충자원은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연구의 소재로 자주 이용돼 왔는데 최근 들어 게놈프로젝트가 수행되면서 곤충유전자가 사람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주목을 끌고 있음
 - 초파리와 누에는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며 덕분에 이들 몸의 각 기관을 형성하거나 개체를 넘나드는 유전자는 이미 잘 알려져 있음. ‘발생’과 ‘분화’, 환경 적응능력과 뇌와 신경과학, 노화 연구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 신약 물질을 개발하려는 움직임 외에도 곤충을 생물소재로 활용하려는 노력들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음
 - 이런 연구는 먼저 곤충의 서식 환경과 행동특성을 관찰하는데서 시작되고 있는데 손꼽히는 사례로는 무당거미에서 실을 만드는 유전자를 찾아내 대량으로 발현시켜, 가벼우면서도 신축력과 강도가 높은 신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임.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면 거미실로 된 천연섬유, 인공피부, 신소재 의복, 인공막, 특수로프를 생산할 수 있게 됨
- 물속에 서식하는 곤충이 분비하는 생체접착물질을 이용하면 물속에서도 붙는 접착제는 물론 수술 후 피부를 붙이는 바이오접착제를 만들 수 있음
 - 누에똥에 많이 함유돼 있는 클로로포피린은 항암치료에 이용됨. 이 물질을 암 환자의 몸에 주입한 뒤 특정과장의 빛을 비추주면 암세포 증식을 막는 효과가 있음
 - 반딧불이의 발광 유전자는 ATP를 측정하거나 누에나 담배 등 다른 생물의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가로수에 이 유전자를 심어

- 발현시킨다면 밤에 빛나는 거리의 나무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음
- 선인장에 기생하는 깍지벌레에서 추출한 붉은색 천연염료는 립스틱이나 분 등의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한편에서는 곤충의 행동을 공학연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음
 - 파리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트는 메커니즘을 비행체에 도입한다면 굉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후각센서분야에도 곤충이 이용됨. 곤충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여러종류의 페로몬을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더듬이의 감각수용체가 대단히 민감하고 정확하기 때문임. 현재 마약이나 특정 물질을 탐지하는 바이오센서로 곤충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함
 - 개미나 벌의 집짓기 능력은 첨단건축구조기술에, 위치측정 능력은 한 차원 높은 자동항법장치의 개발에 이용됨
 - 가볍고 견고한 구조로 된 딱정벌레 껍질은 기동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차세대 전차의 방탄기술 기술로 각광받고 있음
 - 최근 혹한의 환경에서도 얼어죽지 않고 살아가는 곤충의 몸에서 항동결단백질(AFP)이 발견돼 화제를 모았는데 이는 동물이나 작물의 냉해방지제나 얼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시켜주는 식품첨가제, 동상 방지약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곤충의 애벌레 역시 더러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 살아가는데 이는 신체의 방어메커니즘(면역체계)이 잘 발달해 있다는 것임
 - 면역반응은 혈구세포와 같은 식세포에 의한 세포성 면역반응과 생체내 방어물질을 이용한 체액성 면역반응으로 이루어짐
 - 또 내부기생충처럼 비교적 큰 것들에 대해서는 캡슐화(encapsulation)반응으로, 박테리아나 단세포성 곰팡이 침입에 대한 반응은 식균작용으로 나타남
 - 체액성 면역 물질은 몸속에서 외적을 물리치는 것과 침입시 새롭게 자기 방어를 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침입자를 구별해 적혈구 응집반응을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렉틴류, 평소 불활성인 상태로 존재하다 작용하는 멜라닌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펩타이드류의 강한 항생력을 지니는 세크로핀과 디펜신, 항균펩타이드

등이 있음

- 한 예로 멜라닌을 들 수 있는데 곤충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상처가 나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면역반응을 보이기 때문임. 역으로 이 과정을 조절하면 피부의 상처치료제나 멜라닌형성 억제를 이용한 미백화장품을 만들 수 있음. 이처럼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생체방어기작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으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나비에서 세크로핀이 발견되고, 다양한 생체방어 물질들이 분리되면서 최근 연구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음

■ 시사점 등

- 곤충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곤충산업의 육성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즉,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곤충산업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 개발 사업,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 방안, 계획을 세워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승화시켜야 함

■ 관련 단체 등

- 애완 동물 관련 협회

Pet Care Services Association (American Boarding Kennel Association)

Humane Society of America

ASPCA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2_ 생산동향 (연구개발)

- 고밀도 센서 곤충의 촉각은 냄새 물질을 중심으로 갖가지 외부 정보의 수용기관으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음. 곤충의 신경세포 수는 1만-10만개로, 100억 개를 넘는 사람의 신경세포보다는 훨씬 적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비슷하며 현재 바퀴 등을 이용한 곤충의 신경전달의 해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곤충 촉각이 가진 미량의 특별한 물질에 대한 감응력은 최첨단 센서의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바퀴의 촉각이 어떤 화학성분에 반응하는가를 조사함. 촉각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표면에 난 구멍을 통해 냄새 분자를 감지함
- 지능로봇 개발로봇공학에서 발상의 전환은 곤충을 통해 이루어졌음. 로봇에 사람의 의식을 심기보다는 곤충의 행동을 모방해 창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처럼 곤충, 거미, 기타 무척추동물을 모방한 로봇을 로버그(Robug)라고 부름. 뇌 용량이 1mm³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미가 길을 찾거나 먹이를 운반하는 등의 복잡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한 행동의 결과가 신경흐름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차례대로 유발하기 때문임. 머리의 통제가 아니라 몸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방식만으로도 '살아있는 기계'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착상이 여기서 비롯됐음
 - 캐나다 로스 알라모스국립연구소의 마크 털덴은 마이크로프로세서라는 디지털 회로가 아니라 트랜지스터, 축전기, 저항기 등의 아날로그 장비를 이용해 '신경망(nervous net)'를 만들었는데 이 신경망은 조그마한 로봇의 팔다리를 움직이도록 하는 자기 안정화 제어회로임
- 영국의 폴츠마우트(Portsmouth)대학은 로봇 시리즈를 개발하였는데 1986년 1세대(로봇 I)는 압축실린더로 움직이는 6개의 다리로 걷는 로봇을 개발하였음. 다리는 예민한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의하여 그리고 몸체는 노트북 컴퓨터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 로봇은 지표의 표면 변화에 적응하여 걸을 수 있었음

- 그후 2세대(로봇II)는 거미를 모방하여 수직 벽면을 기어오를 수 있으며, 3세대(로봇III)는 계와 거미를 조합 모방하여 걸으면서 100kg의 무게를 수평과 수직으로 끌어 올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장애물을 넘거나 천장에 붙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음
- 이들은 단순한 회로로 이루어졌지만, 향후 첨단장비로 활용이 가능함. 인간이 활동하기 극히 위험한 공간, 즉 원자력발전소의 중수로 세관청소, 폭발물 감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3_ 유통실태 (애완곤충의 경우)

가. 유통현황

■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 애완곤충은 크게 세 가지의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 1) 생산자 → 소비자
 - 2) 생산자 → 소매상 → 소비자
 - 3) 생산자 → 유통기관(브로커/로컬 브로커) 소매상 →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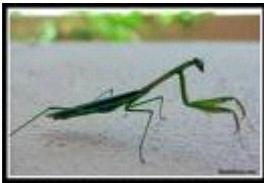
■ 전문점 동향

- 애완동물 서비스 시장의 대표적인 업체는 PetsMart Inc.와 PETCO Animal Supplies, Inc.로 미 애완동물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시장의 11%를 차지함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업체로 이들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 업체 현황 자료는 『관상조류』편 참조

나. 구매 및 소비특성



〈학교 또는 자연박물관에서 학습 도구로 활용되는 모습〉



〈다양한 애완곤충들〉

4_ 수출입동향

● HS 코드 및 관세율

Code	품명	내역	관세율
0106900010	Other live Animals	Worms	Free

출처 : 미국 관세청

■ 수출입동향

● 곤충류 (Other live animals, worms) 수입동향

(단위 : 천US\$)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캐나다	26,219	25,154	30,064	28,417	27,450
네덜란드	2,882	2,927	3,515	3,526	3,982
벨기에	982	1,072	1,520	1,791	2,273
프랑스	253	265	278	372	409
영국	166	155	213	268	199
칠레	43	93	102	102	164
기타	146	138	64	21	17
합계	30,691	29,804	35,756	34,497	34,49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주) 지렁이를 포함한 곤충류 (HS Code : 0106900010)

5_ 기타

■ 관련 산업 동향 참고자료

- 미국 애완동물 용품 협회: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http://www.americanpetproducts.org>
- IBIS World: Industry Market Research Server
<http://www.ibisworld.com/>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목록 등

- 미국보건서비스 U.S. Public Health Service
<http://www.cdc.gov> Tel. (404) 498-1670
- 미국동식물건강검사서비스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Technical Trade Services
<http://www.aphis.usda.gov/NCIE> Tel. (301) 734-8226
- 미국 동물 보호 단체: The Humane Society of United States:
<http://www.humanesociety.org>
- 미국 애완동물 학대 예방 협회: 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SPCA)
<http://www.aspca.org>
- 미국 수의사 협회: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http://www.avma.org>
- 미국의 동물보호소 리스트: Animalshelter.org
<http://www.animalshelter.org/shelters/states.asp>

